

■ 판례 동향

대물렌즈 품목분류에
관한 판례 해설

■ 품목분류 동향

HS 제8476호의 범위와
Reverse Vending
Machine의 품목분류

■ 개정법령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발행인 이종우

편집인 최흥식

총괄 나영주 lordme@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5년 2월 10일(통권 제2117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트럼프의 관세 폭격,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06 Weekly News

전문가 칼럼

- 14**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관세행정실무해설

- 19** 관세평가실무해설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덤'과 '수량할인'의 처리
기준에 관한 검토
- 44** 질의응답사례
검사로 반출된 물품의 재수입

판례동향

- 46** 관세판례해설
대물렌즈 품목분류에 관한 판례 해설

품목분류동향

- 51** 품목분류해설
HS 제8476호의 범위와 Reverse Vending
Machine의 품목분류
- 58** 세번 바로잡기
석탄
- 61** 상식 밖의 상품화
접착제 없이 전기로 붙인다?

최신개정법령

- 64** 입법예고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트럼프의 관세 폭격,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수출기업, 수출통제대상 리스트 및 계약서 작성 유의해야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기도 전부터 예고됐지만,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2월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제조업 부흥,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트럼프의 진정한 관세 압박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멕시코와 캐나다 등이 진정으로 ‘백기투항’한 것은 아니란 시각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급망 이슈는 만만히 볼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타겟이 곧 우리에게도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로펌 필스버리(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 LLP)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들이 워싱턴에서 직접 확인한 현지 상황을 전달했다. 2월 4일 한국무역협회가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진행한 ‘트럼프 2.0시대의 게임룰과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필스버리의 이성범 변호사는 “예측 곤란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도 사전점검을 토대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른쪽부터)필스버리 로펌의 이성범 변호사, 에이미 고쉬 변호사, 스티브 베커 변호사, 애런 허트먼 변호사(출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을 찾은 필스버리 변호사들의 공통된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미국의 그 어떤 대통령보다 취임 후 단기간에 가장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으며, 자신이 목표한 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고 싶어한다는 점이었다. 스티브 베커 변호사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서둘러 협상과 긴급 조치에 나선 덕분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긴급 대응’이라는 것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모두 국경지역에 병력을 여러 차례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대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발표하기 위해 과거에도 있던 일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가 정치 기조로 계속 유지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 ‘3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그후에는 25%의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필스버리의 정부 규제 및 투자 전문가 에이미 고쉬 변호사는 바이든 정부 당시 인센티브 기반의 여러 세제 혜택과 보조금은 동맹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데 효과를 발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법)을 비롯해 각종 보조금, 지원금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미국 내 진출과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고쉬 변호사는 이어서 “워싱턴에서는 연내 법인세율 15% 달성을 위해 세제 개혁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이 필요해 보조금과 같은 지출은 삭감할 것”이라면서도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살펴보기를 권장했다.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산세 혜택, 보조금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갈등이 촉발되며 공급망 이슈는 기업의 중대한 관심사다. 이에 대해 스티브 베커 변호사는 “현재 안전한 국가는 없다”고 단언했다.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공급망을 이전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 중국을 대상으로 美 의회가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만큼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자 하는 입법 움직임도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강조한 미국의 국내산 부품 사용 비율은 더욱 강하게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美 국무부장관으로 임명된 마코 루비오 장관이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을 공동발의한 이력이 있기에 중국과 관련된 강제노동 및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N 리스트와 SSI 리스트에서 최신의 제재대상자를 확인하는 등 수출통제 동향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성도 크다.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혼돈의 시대”라고 작금을 표현한 필스버리의 이성범 변호사 또한 제재대상자 리스트를 우려했다. 의혹을 제기한 정도에 그친 신문기사나 대학논문에 근거해 특정 기업이 제재대상자가 될 수 있어 기업 관련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기업 간 계약서 작성에도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법 개정 없이 IEEPA에 따라 언제든 보편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업으로서는 이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물론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되지만, 전쟁·천재지변 등이 아닌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보편관세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이에 관해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가령 “각국 정부의 조치로 계약 쌍방이 해당 계약 체결의 전제로 고려하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계약 쌍방은 상호협의를 통해 그 부담을 원만히 분담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협회의 조성대 통상연구실장 또한 “기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시기”라며 지금까지 이어진 기존 전략을 대폭 수정하는 것도 제안했다. 적절한 시기에 신속히 전략을 수정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성범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각 국가가 취할 조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김성은 기자 |

中, 흑연·갈륨 이어 텅스텐·몰리브덴 등 수출통제 품목 추가

산업부, 국내 민간재고 및 공공 비축물량, 국내 생산으로 단기 영향은 제한적

미국의 對중국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조치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조치에 나서며 일부 수입품에 대해 10~15% 추가 관세 부과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정부는 우리의 對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텅스텐, 텔루륨, 몰리브덴 등 핵심 광물 5개에 대한 수출통제도 함께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가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5일 산업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중국 상무부가 2월 4일 발표한 텅스텐, 몰리브덴 등 5개 품목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 품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인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수출허가 법정 시한은 45일이다.

텅스텐은 산업, 군사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손꼽히는 전략 광물로 무기, 특히 탄약의 재료로 널리 쓰이고, 몰리브덴은 강철 및 초합금에 첨가돼 고온 강도와 내식성을 향상시키는 물질로 주로 항공기 엔진, 반도체, 원자로 부품 등에 사용된다. 인듐은 낮은 합금, 땀납, 전자제품,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 등에 사용되는 등 주요 산업에 활용되는 광물이다.

현재 5개 광물의 對中 의존도는 수입량 기준 텅스텐 85.4%, 몰리브덴 85.0%, 인듐 92.8%, 비스무트 95.8%, 텔루륨 61.2%로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산업부에 따르면,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비축을 합쳐 약 6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텅스텐 스크랩을 재활용해 일부 생산하고 있다. 몰리브덴도 공공 비축 포함 3개월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 수입금액 기준 텅스텐, 몰리브덴은 對中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급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체 수입처 발굴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은 국내 생산을 통해 대응이 가능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인듐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글로벌 생산량 2위 국가이며, 비스무트는 납 제련의 부산물로 국내 기업이 생산 중에 있어 수급 차질 시 국내 대체 조달이 가능하다. 텔루륨도 국내 생산 중이며, 캐나다 등에서 대체 수입도 가능하다.

산업부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수출통제품목의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고,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중장기적 대응역량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하구현 기자 |

식약처, 세계 최초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월 24일 제정·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는 생성형 AI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사례와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자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생성형 AI는 의료영상 판독, 진단 보조, 치료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수 있지만, 데이터 편향, 정확성 부족, 윤리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이를 활용한 의료기기 또한 이 점을 고려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AI 활용 의료기기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제적이고 투명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규제 조화를 위한 규제외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적합성 자료’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정·발간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제·캡슐제·시럽제,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 소량포장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9,168개 품목을 2월 6일 공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의약품 중 정제·캡슐제·시럽제의 경우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전년도 소량포장단위 출고 비율이 10% 이하이며 재고량 3% 초과 품목 등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은 품목의 경우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업체는 2월 10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체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제형	공고 품목수 (총 1만 9,168개 품목)	소량포장단위
정제	1만 6,335개 품목	날알모음포장 :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 30정·캡슐 이하
캡슐제	2,724개 품목	
시럽제	109개 품목	500㎖ 이하

한상 네트워크 활용 글로벌 비즈니스 전시 부스 참가기업 모집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연계한 기업제품 전시 부스에 참가할 중소기업들을 모집한다. 참가기업은 전시 부스와 운송비, 통역비를 100% 지원받는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교류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로 올해는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며, 중소기업 제품전시회, G2G·B2G 포럼, 스타트업 경연대회 등 구매력 있는 바이어들과의 매칭과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행사의 주관기관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을 구성하고, 전시 부스와 운송비, 통역비 등을 100% 지원한다. 행사 참여 분야는 뷰티·식품 등 생활소비재, 건축자재, 의료기기·의약품 분야로 참여 신청 기업 중 우수 중소기업 30개사를 선정한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글로벌화는 중소기업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세계 각국의 현지 영업사원인 한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해외시장 개척에 관심 있는 많은 중소기업의 참가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www.smes.go.kr/sme-exp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마감은 2월 17일까지다.

EU 디지털제품여권 대응 섬유기업 저탄소 설비 전환 지원

탄소 다배출 노후설비 교체를 희망하는 섬유 기업에 정부가 최대 1억 원의 전환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부터 국내 섬유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2025년도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섬유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과 함께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서 원단 제조 및 염색 과정에서 전체 공정의 절반 이상의 탄소가 배출된다. 특히, 국내 섬유업계는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중이 88.6%로 높아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EU는 섬유제품에 대해 2027년부터 DDP 규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글로벌 섬유·패션 바이어들도 공급망 기업에 대한 탄소 산정·감축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는 기존 저전력모터, 폐수 열교환기 등 저탄소설비로의 교체 지원에서 그 범위를 전력량계, 유량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설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은 70%, 대기업은 50%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업체는 탄소감축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탄소감축 효과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감축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 하구현 기자 |

“바이오에 AI 접목해 경쟁력 ↑”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안보전략 수립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비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 조정·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3일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바이오산업에 접목하는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바이오 안보 전략 수립 등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바이오는 경제, 사회,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기술 분야로, 2027년까지 글로벌 시장 규모가 3조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바이오 제조 기술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됐다. 이에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바이오의약품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은 자금조달 등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국가 바이오 역량을 결집하고 부처별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했다.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위원회 출범식에 발표한 ‘대한민국 생명과학(바이오) 대전환 전략’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명과학(바이오) 분야 전주기 혁신을 위해 ‘한국형 생명과학 산학협력지구(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 규제 혁신과 바이오 안보 강화에 나선다.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전 주기 규제를 개편하고,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팬데믹 등 바이오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는 ‘바이오 안보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바이오 기업의 초기투자자과 스케일업을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 등 1조 원 규모 이상의 메가펀드를 신속히 조성하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으로 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한다.

세계적으로 강점을 보유한 국내 CDMO는 2032년까지 생산능력을 현재의 2.5배로 확대해 생산·매출 모두 명실공히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세계적으로 항공 탄소저감 규제가 강화되며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바이오 항공유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신시장에 맞춰 수출시장을 지원한다.

현재 80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품목을 100대 이상으로 확대해 단계적으로 국산화하고 소부장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해 글로벌 규격 공인시험 분석·테스트를 지원한다.

제도·기반 부문의 혁신도 꺾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AI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신제품·신기술의 허가·심사 기준을 과학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김성은 기자 |

본격화한 美·中 갈등 ··· 韓, 중국 의존 낮추고 ASEAN 활용해야

연평균 5% 성장·5억 명 시장 '인니·베트남·필리핀'이 대안으로 부각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美·中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ASEAN 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아세안 BIG 3, 5억 시장을 활용하라' 보고서에 따르면, ASEAN은 가파른 경제 성장과 중산층 증가로 매력적인 소비시장일 뿐만 아니라 저렴한 생산 비용, 풍부한 원자재, 정부의 적극적 산업 육성 정책을 토대로 차세대 생산기지로서의 가치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최근 ASEAN 주요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에서는 중국에 이어 2대 수입국을 유지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2018년(20.1%) 이후 2022년(17.3%)까지 지속해서 하락했다.

ASEAN 시장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연평균 5% 이상의 경제성장률과 ASEAN 전체 인구의 72%에 달하는 4억 9,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3국이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국가별 주요 경제발전 정책과 주력 수출 품목의 성장성 및 시장성, 정책적 육성 의지 및 잠재성을 고려해 단기 및 중·장기 진출 유망산업을 제시했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新정부가 들어서며 3년 내 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또한 ▲반도체, ▲新재생에너지, ▲누산타라 신수도 건설 등 우선 투자 분야 9개를 선정해 다양한 투자 촉진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장기적으로는 일반기계와 석유화학 등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됐다.

베트남은 '2025 산업 발전 전략과 2035 비전'을 세우고 자국 산업의 적극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추구할 계획이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무선통신기기와 차세대 반도체, 장기적으로는 선박과 전기차 등이 유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對ASEAN 주요 3개국 진출 및 협력 유망품목 ●

국가	분야	단기	중·장기
인도네시아	주력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일반기계, 석유화학, 섬유류, 석유제품
	신성장	전기차, 차세대 반도체, 로봇	에너지신산업
베트남	주력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류, 석유화학
	신성장	차세대 반도체	전기차, 첨단신소재, 에너지신산업
필리핀	주력	석유제품	반도체, 석유화학, 선박류, 자동차
	신성장	차세대 반도체, 첨단신소재	로봇, 에너지신산업, 전기차

무역협회 송효규 연구위원은 “ASEAN 국가들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 및 산업인프라 구축, 디지털 전환,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해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면 좋은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새해 우리나라 첫 수출 성적표 '마이너스'로 출발

수출 491.2억 달러($\Delta 10.3\%$), 수입 510.0억 달러($\Delta 6.4\%$), 수지 $\Delta 18.9$ 억 달러 적자

새해 우리나라 첫 수출실적이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한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출발했다. 장기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일 올해 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한 491억 2,000만 달러, 수입은 6.4% 감소한 510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가 18억 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월 수출실적이 감소한 데는 장기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가 작년 1월 대비 4일 감소한 20일을 기록하면서 수출이 일시적으로 둔화됐다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덧붙여 조업일수 영향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한 24억 6,000만 달러로 2022년 25억 2,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와 컴퓨터 등 IT 분야 2개 품목만 수출이 증가했다.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01억 달러로 역대 1월 중 2위 실적을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및 9개월 연속 수출 100억 달러 이상의 흐름을 이어갔다. 컴퓨터 수출도 두 자릿수(14.8%) 증가한 8억 달러로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 지역별로 살펴보면 1월에는 9대 주요시장 전체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對중국 수출은 춘절 연휴 영향으로 14.1% 감소한 92억 달러를 기록했다. 對미국 수출도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일반기계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9.4% 감소한 93억 달러를 기록했다.

3대 수출시장인 對ASEAN 수출은 2.1%로 소폭 감소했으나 對ASEAN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對베트남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1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한편 주요시장으로의 일평균 수출은 중동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플러스를 기록했다.

1월 수입실적은 6.4% 감소한 5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수입은 14.0% 감소한 113억 6,000만 달러로 원유($\Delta 5.5\%$), 가스($\Delta 20.0\%$), 석탄($\Delta 35.0\%$) 수입 모두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등 원·부자재가 포함된 에너지 외 수입은 설 연휴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3.9% 감소한 396억 달러를 기록했다.

따라서 1월 수지는 수출($\Delta 10.3\%$) 대비 수입($\Delta 6.4\%$)이 낮은 감소세를 보이면서 18억 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월에는 장기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작년 1월에 비해 크게 감소하면서, 수출이 일시적으로 둔화됐다”며, “다만, 조업일수 영향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했으며, 대다수 품목과 시장에서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만큼 우리 수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평가했다.

| 하구현 기자 |

인천공항, 작년 해상-항공 전자상거래 화물 역대 최대 11만 8,000톤 달성

올해도 꾸준한 성장세 전망되나, 美 新행정부 중국발 전자상거래 규제는 변수

글로벌 전자상거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 이점으로 작년 인천공항-해상 복합화물(Sea&Air)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작년 인천공항 Sea&Air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23년 9만 8,000톤 대비 20% 성장한 11만 8,000톤을 기록했다고 2월 5일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Sea&Air 화물은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전자상거래 상품이 인천공항까지 해상을 통해 운송된 후,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을 통해 전 세계로 배송되는 물류체계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은 데다, 인천공항의 우수한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 및 전 세계 192개 도시를 연결하는 허브 네트워크가 기반이 됐다.

공사에 따르면 Sea&Air 최종 목적지는 북미(42%), 유럽(28%) 등 원거리 지역의 국가가 계속해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신흥 지역이 전년 대비 67%나 증가하며 점유율 30%를 달성함으로써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에 힘입어 최종 도착지 국가 수도 2023년 35개국에서 작년 47개국으로 대폭 증가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국에 도착하는 항구별 실적은 인천항(37%), 평택항(35%), 군산항(28%) 순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군산항의 실적이 가장 높았으나, 韓·中 카페리(Car Ferry) 항로 및 인천공항과의 접근성이 부각되며 인천항이 2년 만에 다시 수위를 차지했다.

올해 Sea&Air 전망과 관련해 공사는 미국 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중국발 전자상거래 규제 강화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나, 미주 및 유럽 등 핵심 노선의 화물기 공급 확대와 국내 항만-물류단지-공항에서 3회에 걸쳐 실시되는 철저한 화물검색 체계를 강점으로 활용한다면 올해도 꾸준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2월 14일 '2025년도 인천공항 항공화물 전망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Sea&Air를 포함한 작년 항공화물 실적 분석 및 올해 항공화물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항공화물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인천공항이 가진 지정학적 역량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큰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화물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인천공항 화물 성장의 핵심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관세청, 해외 정보화 사업 설명회 진행

관세청은 2월 19일 서울세관에서 해외 정보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1부는 '2025년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설명'을 주제로 대상국(탄자니아, 튀니지) 관세당국의 관세행정 및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세수 증대와 무역원활화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전한다. 2부는 '2025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 컨설팅 사업 소개 및 제안'을 주제로 대상국(케냐, 나미비아)의 관세 행정 환경·현황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비전 수립 및 전략 과제 정의를 설명한다. 2025년 관세 행정 컨설팅 사업과 공고된 제안 요청 내용을 요약 설명해 사업 추진 내용과 방향성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와 관련해 참가 신청은 관세청 해외 정보화 사업팀(unipass@korea.kr)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K-콘텐츠 남미·유럽 진출 돕는다” 브라질·스페인에 비즈니스센터 개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 콘텐츠 기업의 남미·유럽지역 수출을 지원하고자 브라질과 스페인에 현지 비즈니스센터를 신설했다. 브라질 비즈니스센터는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이어 중남미에서 세 번째로 설립됐다. 브라질 콘텐츠산업은 2023년 기준 약 315억 달러 규모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6% 성장이 예상되는 남미 최대 콘텐츠 시장이다. 1월 23일 열린 브라질 비즈니스센터 개소식에서 주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채진원 총영사는 “브라질은 세계적인 콘텐츠 강국 중 하나로 K-POP을 통한 한류의 인기가 확산되며 K-콘텐츠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협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브라질 비즈니스센터 개소를 통해 양국 간 콘텐츠산업 교류 및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K-드라마 페스티벌 업무협력 MOU 체결도 함께 진행했다.

1월 24일에는 스페인 비즈니스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스페인이 4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스페인어권 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콘텐츠산업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스페인 비즈니스센터는 현지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 글로벌 성공 사례를 창출할 예정이다.

카테터·주사기 등 의료기기 국제 표준화 회의 국내서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 분야(ISO/TC 84) 국제표준화 작업반(Working Group 9, 10, 11) 회의를 서울에서 2월 10~14일 개최한다.

ISO/TC 84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의 기술위원회로 ‘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에 관한 국제표준을 개발·관리하며 분야별로 학계, 정부기관, 협회 등 의료기기 전문가로 세부 작업반(WG)을 구성해 관련 의료기기 제품군이나 기술 영역에 대한 표준을 논의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국제회의는 미국, 덴마크, 독일 등 총 15개 국의 의료기기 전문가 등 약 80명이 참석해 국제표준화 작업반(WG 9, 10, 11)에 따라 ▲(WG 9) 일회용 멸균 요도 카테터 및 무균 배액 카테터 보조 장치 등, ▲(WG 10) 일회용 멸균 피하 주사바늘 및 의료기기 제조용 스테인리스강 바늘 등, ▲(WG 11) 일회용 멸균 주사기 및 멸균 피하 주사기 등 3개 표준 개정 사항을 논의한다.

‘위기이자 기회의 한 해’

2025 글로벌 물류 패러다임이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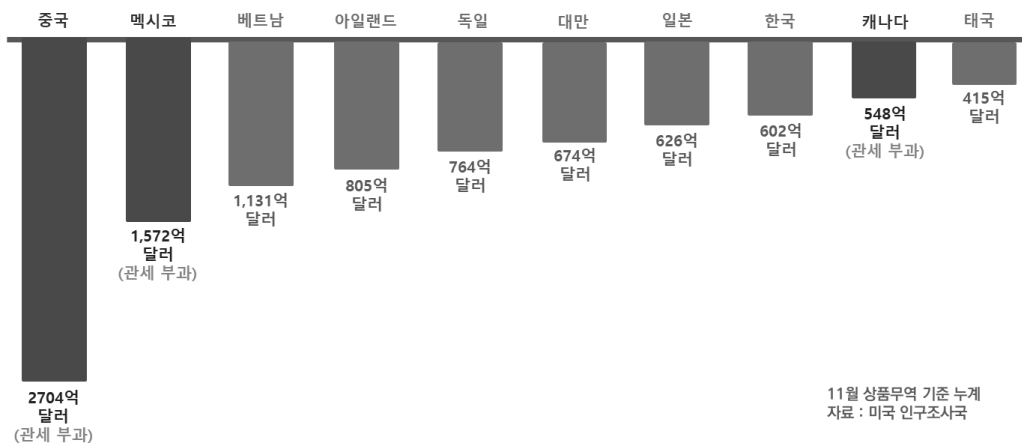


이 태 형 |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과거의 물류 산업이 제조업 등 타 산업을 지원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최근에는 산업 전반에 걸쳐 실물의 이동은 물론 핵심 기반산업으로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류 전략 수립을 위해 알고 있어야 할 글로벌 물류 패러다임도 시시각각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미국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채택하면서 무역, 경제, 대외정책에 있어서 낮은 관세 등 미국에 손실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즉각 시행되고 있는 양상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 1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최근의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대국 미국의 무역제재로 인해 글로벌 물류 패러다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적자국인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만 그치지 않고, 베트남,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도 추가로 무역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물류 전략을 수립할

● 2024년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 10개국 ●



때 우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알아야 하는 최근의 글로벌 물류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내용과 대응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류산업의 특성상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은 그 파급 효과가 물류산업 자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전반으로 확산돼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물류의 프로세스 중 운송부문에서 파업 또는 시스템 정체가 발생할 경우 공급사슬에 포함되는 이해주체의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차질을 유발하고, 이는 관련 산업과 소비자에게로 확대되면서 단편적인 손실이 아닌 복합적인 피해가 유발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즉 추가관세 등 무역제재에 의한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주요 부품과 재료의 수급 불안정은 글로벌 공급사슬에 큰 영향을 미쳐 공급망 위기 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물류산업에서 물류 네트워크의 구성요소는 거점(node)과 운송망(link)이다. 먼저 물류 거점은 상품의 보관, 입고, 출고를 담당하는 국내 물류센터나 화물의 수출입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물류허브 등이 해당된다. 운송망은 자동차, 열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장비와 더불어 도로, 철도 등의 운송경로가 이에 해당된다. 물류의 거점과 운송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와 물류체계의 운영시스템이 필수적 요소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화물이 통상적인 운송시간 내에, 그리고 적절한 운임으로 원하는 장소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공급망 이슈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물류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인 거점과 운송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와 물류 인프라 또는 운영시스템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도 물류부문에 위협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공급망 차질 현상이 지속될 경우 화주 및 물류기업에게 배송지연, 운임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사례로 미국의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를 행정명령을 통해 4개 핵심 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무역전쟁을 방불케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자유무역보다는 경제 안보를 더 중요시하면서 기존의 공급망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공급사슬은 자연스럽게 재편성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기존의 공급망은 그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트럼프의 對中 무역제재, 글로벌 공급망 신호탄 되나

올해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트럼프 1기 시기에 미국 시민이 누렸던 저물가, 저금리,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가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졌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던 부분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탄생시킨 주요 요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와 같은 맥락의 경제정책 수단을 지속하거나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추진하던 보호무역 정책이 지속된 것이 사실이고, 특히 미국의 對중국 무역제재 정책은 8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안정적

경제 성장세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을 충족하기 위해 1기 행정부 때와 기본적으로 같은 경제정책 수단인 관세와 감세 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강한 리더십을 다시 재정비한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았고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경제공동체에 경제, 사회 및 국제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된다. 국제 물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공급망 부문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지금까지 미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對중국 무역관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패러다임 관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미국의 對중국 관세제재의 시작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제재를 시작으로 對중국 무역 전반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고, 그 여세는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 동안 미국의 주요 국가별 수입금액을 통해서 일련의 미국 무역정책의 결과와 글로벌 경제의 변화 양상을 볼 수 있다. 예로서 멕시코, 캐나다, 독일,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총액이 같은 기간에 연평균 약 5.4%에서 7.5%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무역액수는 같은 기간 5.4%나 감소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2020년 7월 1일 발효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을 통해 주변국과의 무역활동에 있어서 경제의 지역 블록화 현상을 진행시켰다.

지난 2022년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제정했다. 이 법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투자를 확대해 친환경 관련 에너지 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전기차 구매자에게 세액을 더 공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IRA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보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실패했고 중국의 영향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미국이 기구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사건은 충격적인 수준이다. 또한 美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삭감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패러다임과는 반대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 중 반도체와 관련된 제재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을 25%로 상향조정했다. 둘째, 對중국 반도체에 대한 제조 장비의 수출통제 기준을 10나노미터(nm·10억분의 1미터)이하 공정에서 14나노미터 이하 공정으로 확대했다. 셋째, 美 행정부의 신규 수출 규제 조치를 들 수 있는데, 엔비디아(Nvidia)의 H100의 수출을 제한한 데서 더 나아가 2023년 들어 그보다 낮은 버전인 A800과 H800 칩의 수출도 제한했다. 넷째, 작년 12월 2일 미국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 및 AI 핵심부품에 중국의 접근을 제한했다. 이 규제안은 반도체 장비와 AI 가속기의 핵심부품이라 할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판매에 추가 제한을 부여하고, 100여 개의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중국도 미국의 이러한 반도체 제재정책에 대응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美·中 무역갈등 현상은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반도체 등 첨단장비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의 가격상승을 초래함과 더불어 한국의 자원 공급망에 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해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 금지규제 강화는 한국의 반도체 업계로도 그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도 간접적으로 미국의 對中 제재 영향권에 속해 있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열처리, 계측장비 등을 포함하는 신규 반도체 장비 24종을 추가 제재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 장비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이 D램의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D램 가격 하락의 여파로 국내 D램 생산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편 미국의 對중국 무역제재의 강화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미국의 움직임에 동참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對중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최근 점점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對중국 무역제재와 추가관세,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보복관세 등의 대응책은 해당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OECD 국가의 공급망 정비를 요구하고 있고, 자국 내 기술 고도화의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글로벌 물류 인프라 확보가 공급망 위기 극복 해법

우리나라의 글로벌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의 수준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항만과 공항 인프라를 중심으로 비교적 좋은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항만 인프라의 경우 국내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항만물류 플랫폼을 활용해서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거점항만 인근에 배후 물류단지를 구축해서 지원하는 형태와 해외 현지 항만을 위탁받아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공항 인프라도 국제 수준의 개발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국외 주요 공항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이미 수행해 오고 있다. 주요 항만과 공항은 대부분 핵심 품목의 수출입이 발생하는 거점으로, 우리나라는 항만과 공항 인프라와 네트워크 수준이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덕분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개척하지 못한 해외 물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즉 선사의 전략적인 항로 개설은 물론 외국적 선사의 운항스케줄을 모니터링해 위기 발생 시 선복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공급망 위기가 예상되는 핵심 부품 및 소재와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운항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차질이 예견될 경우 허브 거점 공항과 항만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조적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즉 비상사태 발생 시 국적 선사 및 국적 항공사를 대체할 수 있는 외국적 선사 및 항공사와의 선제적인 제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 손실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트럼프 2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나타나는 공급망 체계 전환을 모니터링해 공급망 거점을 중심으로 물류 인프라 확보도 지속돼야 한다.

韓,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로 환경변화 대응력 길러야

국가 간 무역협정의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 대상 중 하나다. 앞서 언급한 2020년 7월부터 발효된 USMCA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최근 미국의 관세강화 정책 등 향후 지속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미국과 멕시코,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역의 공급망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대응책 준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도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핵심 지역을 선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국내 기업과 산업의 공급망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미국의 對중국 수출 통제에 따른 국내외 파급 경로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22) '현안과 과제 - 미국의 대중국 무역통제의 영향과 시사점(수출 부가가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의 對중국 무역통제 영향 분석에 따르면 위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과 미국, 중국과 대만의 갈등 심화에 따른 경제제재는 중국으로의 수출 통제로 이어지고, 이는 세계 주요국의 산업수출 및 부가가치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계 주요국의 경제에 압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세계 주요국가는 전략품목과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체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내 생산 위주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만 보유하고 있는 고기술에 대한 R&D 투자확대를 통한 기술력 유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 수출 지역의 다변화와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장기화를 꼽을 수 있다. 이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갈등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관심이 요구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2021년 말 화물자동차 등 경유차량의 배기가스 저감 목적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수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관계로 공급망 위기 시 부족 사태를 경험했다. 또한 주요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중심으로 공급망 위기를 이미 겪고 있다. 앞서 언급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관세정책과 지정학적인 리스크 등 세계 경제는 점차 불확실성이 커지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국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하며, 정책적 뒷받침이 선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그리고 국내 산업의 기술력 제고와 더불어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변화하는 글로벌 물류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해안을 가져야 할 때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덤’과 ‘수량할인’의 처리 기준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수원지법 2022. 4. 28. 선고 2021구합63205 판결 -

이 창 민 | 관세인재개발원 교수

I. 서론

상거래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판촉 수단을 꼽으라면 ‘할인(discount)’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국제 거래에서도 다르지 않다. ‘할인’의 유형은 다양하다. 대금결제 방법이나 시기에 따른 현금 또는 선지급 할인, 거래량에 따른 수량 할인, 거래 기간에 따른 충성도 할인(신용 할인) 등이 대표적이며, 매매 대상 물품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매자의 반대급부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할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한 할인의 방법과 시기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로 ‘할인’은 국제 상거래를 통한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할인’과 가장 유사한 효과를 가진 판촉 수단으로 ‘덤’이 있다. 흔히 ‘1 + 1’이나 ‘2 + 1’과 같이 특정 수량을 유상 구매하면 추가 수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할인’과 ‘덤’은 목적과 효과가 유사한 마케팅 수단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명확히 구분된다. ‘할인’은 가격 그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며, ‘덤’은 일정 비율의 추가 수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무상물품도 관세평가에서 쟁점이 된다. 가격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과세가격을 ‘0’으로 하지는 않는다.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기초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하 ‘거래가격 방법’ 또는 ‘제1방법’이라 함)이다. 따라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애초에 실제 지급한 가격에 기초한 거래가격 방법(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대체 평가방법(이하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이라 함)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대표적인 판매되지 않은 물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는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덤’을 무상물품으로 보느냐, 판매된 물품의 일부로 보느냐에 따라 관세평가 방법이 달라진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이 평석의 주제다.

‘할인’과 ‘덤’의 차이를 간단한 사례로 살펴본다. 음료수를 사기 위해 편의점을 방문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 원래 1병당 990원인 음료수가 10병 묶음으로 판매되는데, 한쪽에선 900원(약 9.1%) ‘할인’해 한 묶음당 9,000원(9,000원 / 10병)에 판매 중이고, 다른 한쪽은 10병 묶음에 1병(10%)을 ‘덤’으로 추가해 9,900원(9,900원 / 11병)에 판매 중이다. 어떤 것을

사야 할까? 어느 쪽이나 1명당 실질적인 단가는 900원으로 같다. 이처럼 ‘수량 할인’과 ‘덤’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유사할 것이며, 때에 따라 정확히 같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덤’을 ‘수량 할인’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필요한 수량이 정확히 10명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전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 둘의 경제적 실질도 같다고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이 글을 쓰게 된 출발점이다.

최근 ‘덤’으로 제공된 무상공급물품에 관한 관세평가 쟁점에 대해 두 건의 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114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구합63205 판결이다. 이 두 판결은 모두 ‘덤’으로 제공된 무상공급물품을 다루면서 ‘수량 할인’에 대한 관세평가 규정과 법리를 적용해 판단하고 있다. 이 두 판결을 분석해 봄으로써 ‘덤’으로 제공된 무상공급물품의 관세평가에 있어 ‘수량 할인’의 규정과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덤’에 대해서는 ‘수량 할인’과 다른 접근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대상 판결의 개요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114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함)

1) 사실관계 및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일본국 법인인 AOO社(이하 ‘수출자’라 함)와 의약품 원료인 SOO(이하 ‘이 사건 원료’라 함)를 단위(BU)당 1,△△△,△△△원에 독점해 수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그다음 해 3월 안에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했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함).

나. 원고와 수출자는 2004. 11.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특약(무료샘플공급)을 포함했는데(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함)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가격(Base Price) : 1,△△△,△△△원 / BU, CIF 서울 항공편
발주 당시 환율을 적용해 일본엔으로 실제가격이 계산됩니다.
- 무료샘플공급(Free Sample Supply) : 무료샘플 정책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구매수량	수출자에서 공급할 무료샘플
연간 1,600BU 미만	무료샘플수량 제외 2004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0%
연간 1,600BU 이상 2,300BU 미만	무료샘플수량 제외 2004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3%, 또는 무료샘플수량 제외 2004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1.5%에 더해 □□□ 영업사원 중 상위 15인의 일본 3박 관광
연간 2,300BU 이상	무료샘플수량 제외 2004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3%에 더해 □□□ 영업사원 중 상위 30인의 일본 3박 관광

다. 이후 원고와 수출자는 이 사건 특약을 2012. 6. 4., 2013. 7. 5., 2014. 6. 4., 2015. 3. 4. 등 4차에 걸쳐 갱신하면서 무료샘플물량은 다음 연도 첫 3개월 이내에 제공한다고 약정했는데, 2015. 3. 4. 4차 갱신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1 ~ 3차 갱신 계약은 해당 연도 도중인 6 ~ 7월에야 체결됐다).

● 2015. 3. 4.자 갱신 계약 ●

구매수량	수출자에서 공급할 무료샘플
연간 1,600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 2015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0%
연간 1,600BU 이상 2,000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 2015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3%
연간 2,000BU 이상 2,300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 2015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4%
연간 2,300BU 이상 3,000BU 미만	무료샘플물량 제외 2015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5.5%
연간 3,000BU 이상	무료샘플물량 제외 2004년에 원고가 구매한 물량의 17%

라.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이 사건 원료(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함)를 각각 2014. 1. 15., 2014. 12. 9., 2015. 4. 29. 3회²⁾에 걸쳐 임의의 가격인 단위(BU)당 일본국 통화 5,000엔으로 해 수입신고했다.

마. 피고는 2015. 7. 7.부터 7. 31.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됐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가 정한 방법(이하 ‘제2방법’이라 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단위당 구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 2015. 12. 16. 원고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바. 원고와 수출자는 2015. 11. 26. 이 사건 계약상 무료샘플이라는 표현을 수량할인(Volume Discount)으로 대체하고 이를 2012. 6. 4.부터 소급 적용하며, 원고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한 이 사건 원료의 수정단가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총합을 무료샘플을 포함해 연간 선적된 총수량으로 나눈 값이라는 취지의 수정계약서를 작성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수입 건별로 확정가격에 기초해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양 당사자가 결정한 잠정적인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원고가 연간으로 일정 수량

1) 2012. 6. 4., 2013. 7. 5., 2014. 6. 4., 1 ~ 3차 갱신 계약의 주요 내용은 2015. 3. 4. 4차 갱신 계약과 구매수량 구간 및 각 구간별 무료샘플물량의 비율만 조금 상이할 뿐 대부분 동일하다.

2) 2012년 유상구매물량(3,100BU)의 14.5%인 450BU는 2014. 1. 15.에, 2013년 유상구매물량(1,600BU)의 11%인 170BU는 2014. 12. 9.에, 2014년 유상구매물량(1,400BU)의 11%인 150BU는 2015. 4. 29.에 각각 수입신고됐다.

이상을 구매한 경우 사후적·조건적으로 할인물량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결국 수량에 따른 할인을 적용해 최종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으로서 이 사건 특약은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제공하는 할인물량은 수량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원고가 유상구매물량의 대가로 지급한 ‘총지급액’을 연간 유상구매물량과 연간 유상구입물량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는 할인물량인 이 사건 물품을 합한 ‘총구매물량’으로 나눈 금액이 되어 함에도 이 사건 물품이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1조(제2방법)에 따라 유상구매물량에 대한 잠정적인 기본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82446 판결)

제1판결의 원심은, 이 사건 특약은 **수량할인이나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31조 제1항과 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이 사건 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인 유상구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제2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³⁾을 대부분 인용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원심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특약은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업적 관행상 어떠한 계약은 잠정적으로만 결정되는 가격조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최종적인 결정은 해당 계약 자체의 규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요소들에 따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품질 등 일정한 사항을 가격결정 요소로 기능케 하면서, 그러한 요소가 변경되거나 사후에 확인됨에 따라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가격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조정약관은 평가대상 물품이 수입통관되기 전 계약상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1) 이 사건 계약 당시 유상구입물품의 기본가격(Base Price)은 한화로 정하고, 발주가 이루어지면 실제 가격은 기본가격에 환율을 적용하여 일본 엔화로 계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확정된 기본가격이 향후 구입물량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는 약정하지 아니한 점(한화로 확정된 기본가격을 원고가 주장하는 ‘잠정적인 기본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2) 실제로도 위와 같이 계산된 가격으로 유상구입물품의 실제 가격이 책정되어 수입신고가 되었을 뿐 가격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3) 반면에 원고는 무료샘플공급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따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입하면서 ‘임의의 가격’인 5,000엔으로 수입신고한 점, (4) 구입물량에 따른 이 사건 물품의 무상제공으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는 전체 거래가격이 낮아진다는 하더라도 이는 무상제공 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인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특약은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합52153 판결

2) 이 사건 특약은 수량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량할인은 정해진 기준연도 동안 구매된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고객에게 물품가격에서 공제하기로 허용한 금액으로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가격표에 따라 자신의 물품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1) 이 사건 특약상 구매수량에서 무료샘플물량을 제외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계약상 유상구입 물품의 실제가격이 1,△△△,△△△원/BU의 발주 당시 환율로 계산한 일본엔화로 확정되어 있는 점, (3) 이 사건 물품의 수입통관 이후 비로소 작성된 2015. 11. 26.자 수정계약서상의 수정단가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특약은 수량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까지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WCO 권고의견 1.1에 의하면 가격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는 판매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런데, (1)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특약이 이 사건 관세조사가 있을 후 2015. 11. 26. 수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물품을 무료샘플로 표현한 점에 비추어 원고와 수출자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최초 계약 당시 무료샘플 공급과 선택적 혹은 병행적으로 판매사원들에 대한 무상 일본관광 상품이 제공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무료샘플도 판매 촉진을 위한 보상으로 무상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유상구입물품의 경우 기본 가격인 1,△△△,△△△원/BU의 발주 당시 환율로 계산한 일본엔화가 실제지급가격이고, 원고는 수출자에게 유상구입물품의 대가만을 지급한 점, (4) 이 사건 물품은 유상구입물품과 별도로 수입신고되고 이에 대하여 따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점, (5)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을 임의의 가격인 5,000엔으로 수입신고한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물품은 가격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무상수입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제1판결의 판단(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무상성,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이 사건 특약은 구매수량이 연간 1,600BU 미만인 경우 연간 구매수량의 10% 또는 11%를 추가로 공급하고, 구매수량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구간별로 더 큰 비율에 따른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수출자 사이에는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드시 추가로 공급된다는 것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지급액’은 변하지 않으나 ‘연간 총구매수량’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2)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잠정적인 기본 가격을 설정하고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지급액과 연간 총구매수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 3)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추가로 공급되는 물품의 수량은 연간 구매수량의 10% 이상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이 ‘무료샘플’이라는 명목으로 공급되었고, 원고가 이를 수입할 당시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원지법 2022. 4. 21. 선고 2021구합63205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함)

1) 사실관계 및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일본국 법인인 K○○社(이하 '수출자'라 함)로부터 협착성 관상동맥 확장용 1회용 의료용품 P□□ ballon catheters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함)을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일정 수량 구매하면 이 사건 물품을 일정 수량 추가로 제공받고(이하 '일반 FOC(Free Of Charge) 조건'이라 하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을 '일반 FOC 물품'이라 함), 원고가 연간 누적해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하면 이 사건 물품을 일정 수량 추가로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계약 FOC 조건'이라 하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을 '계약 FOC 물품'이라 함. 이 일반 FOC 물품과 계약 FOC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유상물품'이라 함)을 했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수출자는 매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6. 4. ~ 2019. 3. 기간 동안 각 품목별 판매단가와 일반 FOC 조건 등은 변동이 없으며, 매년 계약 FOC 조건만 다음과 같이 변경됐다.

■ 2018. 4. 1.자 계약(2018. 4. 1. ~ 2019. 3. 31.)

품목	판매단가	일반 FOC 조건 및 제공수량	연간 구매목표(2018년)
Th◇◇	¥21,△△△	10개 구매시 3개 제공	2,500개
I○○ Rev & Zero & Ra○○	¥22,△△△	3개 구매시 1개 제공	20,660개 (P□□ 제품군)
Fo▲▲	¥21,△△△	4개 구매시 1개 제공	
Cru▽▽	¥21,△△△	10개 구매시 3개 제공	1,000개

- 최소구매수량 : 50개

■ 연도별 구매목표 및 계약 FOC 물품 수량

(계약 FOC수량 / 목표 수량)

품목	2016. 4. ~ 2017. 3.	2017. 4. ~ 2018. 3.	2018. 4. ~ 2019. 3.
Th◇◇	없음 / 2,700개	없음 / 2,500개	없음 / 2,500개
P□□ ballon catheters 제품군	870개 / 14,130개	2,000개 / 15,500개 2,638개 / 17,362개	4,340개 / 20,660개
Cru▽▽	없음 / 400개	70개 / 700개	150개 / 1,000개

다. 원고의 2016. 4.경부터 2019. 3.경까지 P□□ ballon catheters와 Cru▽▽ 품목의 구매목표 수량, 실제 구매실적 및 계약 FOC 물품 제공 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

● 제2판결의 품목별 목표 수량, 구매실적 및 계약 FOC 물품 제공 수량 ●

품목	2016			2017			2018		
	목표 수량	구매 실적	제공 수량	목표 수량	구매 실적	제공 수량	목표 수량	구매 실적	제공 수량
P□□ ballon catheters	14,000	14,△△△	870	17,300	17,6△△	2,675	20,000	20,△△△	4,340
Cru▽▽	해당 없음			700	630	70	1,000	700	70

즉, 원고는 P□□ ballon catheters 품목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구매목표를 충족해 약정된 계약 FOC 물품 수량을 제공받았고, 2017년의 경우 연간 구매목표를 초과달성함에 따라 약정된 계약 FOC 물품 수량보다 37개(2,675개 - 2,638개)를 더 제공받았다. 또한 Cru▽▽ 품목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연간 구매목표를 충족하지 못했으나, 2017년에는 계약 FOC 물품 70개를 제공받았으며, 2018년에는 계약 FOC 물품 70개를 제공받았다.

라.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월별 구매주문 시 각 품목 및 세부 규격별로 유상물품 수량과 이에 상응하는 일반 FOC 물품 수량뿐 아니라 연간 예상되는 계약 FOC 물품 수량의 일정량을 함께 주문(일반 FOC와 계약 FOC 물품은 합해 ‘FOC’라고만 표시)했고, 수출자는 이러한 구매주문에 따라 유상물품은 ‘Commercial Products’로 FOC 물품은 ‘Sample Products(No Commercial Value)’로 구분·표시해 주문된 수량과 계약상 판매단가에 기초한 금액이 기재된 송장(Invoice)와 함께 주문된 물품을 공급했고, 원고는 이 같은 Invoice를 기초로 유상물품과 무상물품(FOC)을 구분해 유상물품과 무상물품 모두를 이 사건 계약상 판매단가를 기초로 수입신고했다.⁴⁾

마. 원고와 수출자는 2019. 4. 1. 연간 구매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품목별 단가를 단일하게 인하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변경했고, 연간 구매목표 미달 시 수출자는 단가 인상 옵션을 가지게 됐다(일반, 계약 FOC 조건 삭제).

4) 원고는 유상물품은 실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제1방법(거래가격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했고, 무상물품(일반 및 계약 FOC 물품)은 제2방법으로 신고한 것이다.

■ 2019. 4. 1.자 계약

품목	판매단가	연간 구매목표
Th◇◇	¥16,***	2,500개
I△△ Rev & Zero & Ra△△ Fo▲▲	¥13,***	27,000개
Cru▽▽	¥16,***	1,000개

- 최소구매수량 : 50개

- 만약 연간 구매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수출자는 판매단가를 높일 선택권을 갖게 된다.

바. 원고는 2019. 5. ~ 7.경 피고(통관지세관장)들에게 “2014. ~ 2019. 수출자에게 지급한 거래 가격에 사실상 수량할인에 해당하는 일반 FOC 조건에 따른 일반 FOC 물품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했고, 피고들은 이를 승인했다.⁵⁾

사. 원고는 또한 2019. 8. ~ 9.경 피고들에게 “2015. ~ 2019. 수입한 계약 FOC 물품의 경우에도 일반 FOC 물품과 마찬가지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거래가격에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했다(이 사건 처분에 해당함).

2) 제2판결의 판단(수원지법 2022. 4. 21. 선고 2021구합63205 판결)

수원지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약 FOC 조건은 수량할인에 해당하지 않고 무상제공물품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가) 수량할인은 적어도 수입신고 시점에 할인을 적용받기 위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WCO 권고의견 15.1 <예시 4>에 의하면 “특정기간 동안 모든 수입이 완료된 후 결산이 이루어지고, 해당 기간 동안 수입된 총 수량을 기초로 추가 3%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소급적으로 인정된 3%의 할인을 과세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에는 연간 구매목표 수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구체적인 구매의사, 확정가격 및 확정수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만으로 원고에게 연간 구매목표 수량을 구매하겠다는 확

5) 라 목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수입신고 당시 유상물품을 1란, 무상물품을 2란으로 구분하고 모두 이 사건 계약상 판매단가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신고해 왔으나, 2019. 6. 18.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일반 FOC 물품에 대해 “원고와 수출자는 2014년부터 매번 유상물품 주문 시 일반 FOC 물품의 개수 또는 비율만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해당 유상물품과 동시에 일반 FOC 물품이 한번에 주문되고, 하나의 송품장으로 작성되는 등 거래관행상 하나의 동일거래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원고가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하는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일반 FOC 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승인받은 것이다. 해당 사전심사에서 계약 FOC 물품은 일반 FOC 물품과 달리 무상물품으로 결정됐고, 원고는 이에 과세가격 사전심사 재심사를 신청했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원 사전심사 결과와 동일하게 “계약 FOC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 봐 제2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재심사 결과를 2019. 8. 5. 통보했다.

정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 <중략> … 개별 거래로 인한 수입신고 시점에는 계약 FOC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수입신고 당시 거래가격에 계약 FOC 물품의 대가가 포함되어 단가할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연간 구매목표 수량을 달성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물품까지 포함한 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수입단가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계약 FOC 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수출자와 연간 구매목표 수량을 구매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계약 FOC 조건은 차후 연간 구매목표 수량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구매수량에 상응하는 계약 FOC 물품을 회수하기로 하는 해제조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 FOC 조건 충족 시 계약 FOC 물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계약서의 문언과 배치된다.

라) 원고는 개별 거래 당시 유상물품, 일반 FOC 및 계약 FOC 물품을 구분하여 주문하였고, 수출자로부터 계약 FOC 수량을 안분하여 미리 제공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수출자는 송품장에 유상물품의 계약서상 판매단가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던 점, ② 원고도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을 구분하여 계약서상 판매단가를 기초로 수입신고·납부를 하였던 점, ③ Cru▽▽ 품목의 경우 2017, 2018년 연간 구매목표 수량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점(다만, 2018년에는 연간 구매목표 수량을 1,000개에서 700개로 변경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수출자는 개별 거래 당시 원고에게 계약 FOC 물품을 안분하여 미리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호의로 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원고와 수출자는 2019. 4. 1.부터 연간 구매목표 수량을 충족하는 경우 판매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계약 FOC 물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기존 계약과 구분된다.

바) 원고는 계약 FOC 조건도 일반 FOC 조건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최소 주문 단위는 50개이고, 일반 FOC 조건은 3개 내지 10개이므로 원고의 개별 주문 시점마다 일반 FOC 조건이 충족되어 일반 FOC 물품은 반드시 제공받게 되나, 계약 FOC 물품은 원고의 개별 주문 시점에는 계약 FOC 조건의 충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III. 대상 판결의 평석

제1판결과 그 원심판결, 제2판결은 모두 일정 수량의 구매에 대해 주어지는 무상물품 즉, ‘덤’을 다루고 있으나, 쟁점이 된 주제와 그 결론에 있어 모두 다르다. 제2판결은 ‘수량할인’의 관점에서 봤고, 제1판결의 원심은 ‘수량할인’과 함께 ‘가격조정약관’ 인정 여부를 검토해 ‘덤’을 무상수입물품(판매되지 않은 물품)으로 봤다. 반면, 제1판결은 ‘수량할인’의 쟁점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기초로 ‘무상성’ 즉, 대가의 지급(대가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판단했다.

● 대상 판결의 쟁점과 결론 ●

구 분	제1판결	제1판결 원심	제2판결
쟁 점	무상성(대가 지급 여부) 실질과세 원칙	가격조정약관 수량할인	수량할인
결 론	무상물품 아님	무상물품	무상물품

이 장에서는 각 판결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덤’과 ‘수량할인’에 대한 관세평가상 법리와 처리 기준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논의 편의상 ‘제2판결’ → ‘제1판결 원심’ → ‘제1판결’ 순으로 검토한다.

1. 제2판결에 대한 평석(수원지법 2021구합63205 판결)

1) 관세의 과세단위와 개별 계약의 확정

관세의 과세단위는 일정 기간이 아니라 해당 수입물품이 기준이 된다. 과거 수입신고 건별인지, 그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이 기준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판결로 관세 과세단위는 각 수입물품임을 명확히 했다.⁶⁾ 물론 과세단위가 수입물품이라 해서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에서 거래당사자 간의 전체 거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⁷⁾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낙성계약, 불요식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서면 등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유효한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계약이 성립한다. 국제거래에서 장기간 반복적인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 당사자들은 통상 대략적인 계약 조건들을 규정한 포괄계약을 체결하고, 매 거래 시 매도확약서(offer sheet)나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등을 통해 구체적인 수량, 가격 등을 확정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해 계약을 완성한다. 때로는 이 개별계약의 내용이 포괄계약과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개별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서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데, 여기서 ‘판매’란 실제 해당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게 한 원인이 되는 개별계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관세평가에서는 해당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된 개별계약을 중심에 두고, 당사자 간의 전체 거래인 포괄계약을

6) “관세의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관세법령의 규정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관세의 과세단위 및 신고·납부의 기준 등에 관한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고(「관세법」 제14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제15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제16조). 따라서 관세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과세단위가 구분**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전략> … 관세의 신고·납부는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략> … 관세의 경정청구도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두53767 판결)

7) “관세는 일정 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물품의 수입신고별로 과세**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액을 고려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두54869 판결 등)

“관세평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법 2017. 8. 23. 선고 2016누79177 판결 등)

“「관세법」상 **과세가격 평가는 개별 품목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개별 품목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판단할 때 **거래 전체의 가격 결정 방법도 하나의 간접사실로서 고려**할 수 있다”(부산고법 2017. 7. 21. 선고 2016누24441 판결 등)

함께 살펴봐야 한다.

2) 제2판결에서 개별 계약의 실제

제2판결에서 개별 수입물품에 직접 관련된 개별 계약인 각각의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와 그에 따른 실제 계약이행의 결과인 물품 공급 및 대금 지급의 실재를 살펴본다.

원고는 개별 구매주문서로 구매할 유상물품과 그에 따라 정해지는 일반 FOC 물품 수량뿐만 아니라 연간 구매목표 충족 시 제공하기로 한 계약 FOC 물품(연간 예정된 계약 FOC 물품 수량을 적절히 배분한 수량)을 함께 주문했다. 그러면 수출자는 그 주문대로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일반 + 계약 FOC 수량)을 원고에게 공급하면서, 송품장에 유상물품 수량에 대한 가격만 청구하고 무상물품은 'No Commercial Value'로 해 대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포괄계약상에는 해당 계약기간(연도) 동안 일정 수량 이상 구매 시 계약 FOC 물품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구매목표가 아직 달성되지 않았음에도 개별 계약에 의해 일정 수량의 계약 FOC 물품이 공급됐던 것이다. 실제 구매주문서와 송품장상에 일반 FOC와 계약 FOC 물품은 별도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런데 계약기간 말에 연간 목표수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이렇게 공급된 계약 FOC 물품은 어떻게 됐을까? 실제 Cru▽▽ 품목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에 연간 목표수량을 충족하지 못했다. 2017년의 경우 목표수량인 700개에 못 미치는 630개만 구매했을 뿐이지만 약정된 계약 FOC 물품 70개는 그대로 제공(개별 주문에 따라 연도 중 분할 공급)됐고 추가 대금지급이나 물품 회수는 없었다. 2018년(2018. 4. ~ 2019. 3.)의 경우에도 당초 목표수량 1,000개에 계약 FOC 150개로 약정했으나, 계약연도 종료를 앞두고 목표수량 미충족이 예상되자 원고와 수출자는 협의를 통해 목표수량 700개에 계약 FOC 수량 70개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변경 합의 당시 이미 90개의 계약 FOC 물품이 제공됐던 상황이었으므로, 초과한 20개만큼을 남은 계약기간인 2019. 2. ~ 3. 주문 건에 제공할 일반 FOC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쇄했다.

● FY2018 Cru▽▽ 품목 주문 및 공급 현황 ●

Order No.	Invoice No.	유상물품	FOC 합계	일반FOC	FOC계산 (유상 × 0.3)	계약FOC
18Apr-1	E-18*****4	44	26	13	13.20	13
18MAY-1	E-18*****4	63	32	19	18.90	13
18Jun-1	E-18*****7	63	32	19	18.90	13
18JUL-1	E-18*****3	28	22	9	8.40	13
18AUG-1	E-18*****6	28	22	9	8.40	13

Order No.	Invoice No.	유상물품	FOC 합계	일반FOC	FOC계산 (유상 × 0.3)	계약FOC
18AUG-2	E-18*****6	35	10	10	10.50	
18SEP-1	E-18*****6	5	15	2	1.5	13
18SEP-2	E-18*****5	23	7	7	6.90	
18OCT-1	E-18*****0	6	14	2	1.80	12
18OCT-2	E-18*****1	15	5	5	4.50	
18NOV-1	E-18*****9	15	5	5	4.50	
18DEC-1	E-18*****2	38	12	12	11.40	
19JAN-1	E-18*****1	46	14	14	13.80	
19FEB-1	E-19*****8	50	0	12	11.40	-12
19FEB-2	E-19*****6	20	0	5	4.50	-5
19MAR-1	E-19*****7	26	4	7	6.90	-3
19MAR-2	E-19*****1	35	10	10	10.50	
합계		540	230	160	156.00	70

※ 원고 회사가 내부적으로 연간 주문내역을 관리한 자료(Excel)를 기반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 제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9. 2. ~ 3. 3건의 개별 계약에서 계약 FOC ‘-20개’는 이미 제공된 계약 FOC 물품을 회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실제 구매주문서와 송품장 상에서는 유상물품에 비례해 제공하기로 한 일반 FOC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문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계약)하고 이를 이행했을 뿐이다. 2019. 3. 실제 구매주문서와 송품장은 다음과 같다.

● 2019. 3월 Cru▽▽ 품목 구매주문서와 송품장(발취) ●

Purchase Order - March

2019-03-04

Product name	Item code	Qty	FOC
penetration Cru	KMF0114A	26	4

INVOICE

This invoice covers our sale to you for the undermentioned good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below.

To: Korea Ltd.

Date: 01/03/2019

Invoice No.: E-190227407

I : Commercial Products

Description	Quantity	Price JPY	Amount JPY	Remark
KMF0114A Cru	26 UNIT	21,500.00 ¥	559,000.00	K19Mar-(1)

Sample Products (No Commercial Value)

Description	Quantity	Price JPY	Amount JPY	Remark
KMF0114A Cru	4 UNIT	21,500.00 ¥	86,000.00	K19Mar-(1)

즉, 포괄계약상의 연간 구매목표가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계약 FOC 물품을 회수하거나 추가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그로 인해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과거 수입된 물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변경 이후 개별 계약에서 일반 FOC 물품이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계약 변경의 효과는 그 이후 개별 거래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3) 일반 FOC 물품과 계약 FOC 물품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는가?

먼저, 일반 FOC에 대해 본다. II.-2-1)-바. 목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일반 FOC 물품에 대해 ① 유상물품 주문 시 일정 수량만큼 무상 제공하기로 한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었고, ② 유상물품과 동시에 한 번에 주문되고 하나의 송품장으로 작성되는 등 거래관행상 하나의 동일거래로 취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상물품과 일반 FOC 물품은 해당 실제지급가격(제1방법)으로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결정했다(즉, 일반 FOC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이 아니며, 그 과세가격(단가)은 [해당 거래의 실제지급가격 / (유상 + 일반 FOC 물품 수량)]으로 결정청구를 승인했다).

일반 FOC 물품을 무상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유상물품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취지는 세계관세기구(WCO)가 발간한 ‘관세평가 교육훈련모듈’ 연습 문제 15.5에서 찾아볼 수 있다.

● WCO 관세평가 교육훈련모듈 ●

■ 상황

- 수입자는 역도운동용 장갑 1,500켤레를 주문
- 수출자와 수입자는 수입국내 상품 판촉을 위해 매장 소비자에게 1켤레 구매 시 1켤레 무료 제공(즉, 1 + 1) 판촉 행사를 합의
- 이 합의의 일부로, 수출자는 추가 1,500켤레 장갑을 수입자에게 무상 제공
- 실제 선적은 3,000켤레이며, 송품장에 1,500켤레는 무상으로 명시(금액은 켈레당 20c.u. × 1,500 = 30,000c.u.)

■ 해답

- 판매계약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하나 가격에 두 개” 형태로 실제 30,000c.u. 가격에 3,000켤레를 받을 것이 명확히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물품에 대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30,000c.u.다. 이 사례에서 수입자는 3,000켤레를 받을 것을 알고 있다. 이 제안의 조건이 소급하여 이뤄진 것이 아니라 원래 판매계약의 일부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 만약 서류에 추가 1,500켤레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추가 장갑에 대해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추가 1,500켤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2방법에 따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할 수 있다.

상기 WCO의 해설을 보면, 무상으로 제공된 추가 1,500켤레에 대해 ‘할인’의 개념이나 평가 논리를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무상물품을 하나의 개별 계약에 의해 유상물품과 함께 거래된 물품인지, 즉 유상물품의 가격으로 함께 판매된 것인지 여부만 따진다. 하나의 거래(개별 계약)인지 여부는 판매계약과 관련 상업서류에 의해 판단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무상물품 제공 조건이

물품의 수입 이후 소급해 약정된 것인지를 확인하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제2판결의 사실관계에서 일반 FOC와 계약 FOC 물품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개별 구매주문서와 송품장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단지, 전체 거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 FOC 물품은 수입 당시 포괄계약의 조건(개별 유상물품 주문수량)이 이미 충족됐던 것이고, 계약 FOC 물품은 포괄계약의 조건(연간 목표수량 구매)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뿐이다.

수입 당시 개별 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 FOC 물품과 계약 FOC 물품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이들 FOC 물품은 유상물품과 함께 하나의 주문에 따라 하나의 송품장으로 작성되는 하나의 거래(개별 계약)에 의해 수입된다. 즉, 계약 FOC 물품도 일반 FOC 물품과 마찬가지로 수입 이전에 원고와 수출자 간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유상물품의 가격으로 함께 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무상 공급 조건이 각 개별 물품 수입 이후 소급해 생긴 것도 아니다. 상기 WCO 교육훈련모듈의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

하나의 차이점인 연간 목표 수량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진 것이 있었는가? 앞서 2)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Cru▽▽ 품목은 2017년과 2018년 목표 수량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추가 대금 지급(소급 가격 인상)이나 물품 회수는 없었다. 2018년과 같이 포괄계약(계약 FOC 조건) 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도, 이미 이행된 개별 계약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기제공된 FOC 물품을 회수하지 않았으며, 계약 변경 이후 잔여 계약기간 동안 체결되는 개별 계약에서 일반 FOC 물품의 수량을 감소시켰을 뿐이다. 즉, 포괄계약 변경의 효과는 소급해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 후 개별 계약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4) ‘덤’(무상제공물품)을 평가할 때 ‘할인’의 논리가 적용돼야 하는가?

‘할인’이란 가격을 깎아 주는 것으로 관세평가에서 ‘할인’의 문제는 두 가지 쟁점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할인된(後) 가격’에 기초한 거래가격을 수용할 것인지 즉, 거래가격 배제사유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둘째는 ‘할인 금액’을 거래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정확하게는 ‘할인금액’이 간접지급⁹⁾의 다른 표현인지 여부다.

첫째, 거래가격 배제사유 해당 여부와 관련해, 일반적인 수량 할인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처분·사용의 제한), 제3호(사후귀속이익) 및 제4호(특수관계의 영향)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다. 문제 될 수 있는 배제 사유는 제2호의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¹⁰⁾이다. WCO 권고의견 15.1의 예시 2에서 “구매자가 이전에 구매한

8)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

9)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10) 협정 제1조제1항 (b)호에는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the sale or price is not subject to some condition

수량을 고려하여 판매자가 수량할인을 허용한다는 사실이 제1조 제1항 (b)의 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포괄계약 등에 포함된 수량별 할인 조건과 같이 ‘수량에 기반한 고정 할인표(fixed scheme)’에 따라 수량할인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WTO 관세평가협정」(이하 ‘협정’이라 함) 제1조 제1항 (b)에 대한 주해 1.(a) 단락의 ‘구매자가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¹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이전에 구매한 물품(수량)’을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 간접지급이 외형상 ‘할인(금액)’으로 나타난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판매자의 채무를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상계하거나 달리 변제하는 금액이 송품장 등에는 ‘할인’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WCO 권고의견 8.1의 ‘종전거래와 관련한 신용채권(credit)’ 등이다. 이러한 ‘간접지급’ 금액은 거래가격에 포함된다.

추가로 ‘할인’과 관련한 쟁점으로 ‘할인’이 ① 해당 물품의 수입 이후에 소급해 주어지거나(이하 ‘소급 할인’이라 함)¹²⁾, ② 수입 당시 ‘조건부 할인’이 주어졌는데 그 조건의 성취가 불확실한 경우(이하 ‘조건부 할인’이라 함)가 있다. ① ‘소급 할인’은 본질적으로 수입 이후 가격 변경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서, WCO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으면서 각 국가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¹³⁾ ② ‘조건부 할인’은 수입신고 시점에 할인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지급해야 할 가격 즉,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부 할인’의 처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은 정립돼 있지 않다. 다만, 수입 이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가격이 지급되거나 추가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 해당 금액은 당연히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or consideration for which a value cannot be determined with respect to the goods being valued)”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11) 협정 제1조 제1항 (b)호에 대한 주해 제1단락에는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3가지 경우를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a)호는 ‘구매자가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다.
- 12) 여기서 말하는 ‘소급 할인’은 종전 거래 물품에 대해 수입 이후 소급해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종전 거래 물품에 적용되는 할인 금액을 이후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차감(즉, 상계)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후자는 권고의견 15.1 예시 3에서 ‘27단위의 첫 번째 선적분에 대한 3% 추가 할인(금액)을 두 번째 42단위 선적분의 가격에서 공제한 것’으로 권고의견 8.1의 ‘종전거래와 관련한 신용채권(credit)’으로 간접지급으로 처리된다.
- 13) WCO 권고의견 8.1 “신용채권을 발생시킨 종전 거래에 대하여 세관이 용인하는 평가처리는 현 선적분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격에 대한 어떠한 결정과도 별개로 결정되어야 한다. 종전 선적의 가격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권고의견 15.1의 예시 3과 4의 해설 참조. 이 같은 ‘수입 이후 가격의 변경’에 대한 관세평가상 처리에 관해 우리나라 법령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 글의 핵심 주제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이 쟁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창민,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실제지급가격 결정 시 수입 이후 가격의 변경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068호(2024. 1. 29.), 제2069호(2024. 2. 5.)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들 추가 쟁점에는 수입 이후 가격 변경을 다루는 데 있어 세관당국의 원칙적인 ‘관세채권의 확정 시점’과 ‘부과·징수권 확보’와 같은 관세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협정이나 WCO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국의 법령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덤’은 ‘가격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 따라 ‘추가 수량이 무상으로 제공 되는 것’이다. ‘덤’으로 인한 효과는 ‘할인’과 유사할 수 있으나, ‘덤’은 실제 ‘가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할인’의 쟁점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 즉, ‘할인’의 쟁점은 가격 인하의 원인(거래 가격 배제사유 해당 여부)과 그 인하된 금액의 실질(간접지급액 해당 여부)을 파악하는 것이며, 추가 쟁점도 가격 인하의 시기나 확정 여부에 대한 것인 반면, ‘덤’은 명목상 무상수입된 물품 그 자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다. ‘덤’으로 제공된 물품은 그 자체로 ‘가격 인하’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덤’이 조건부로 주어지고 추후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도, ‘덤’이 반환되는 것은 수입 이후 재수출 등의 문제일 뿐이며, 혹은 추가 대금 지급이 이뤄지면 추가지급액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해 과세하면 될 뿐이다.

‘덤’에 대한 관세평가상 쟁점은 유상물품과 하나의 거래에 의해 수입된 것인지 여부로서, 단일 가격으로 유상물품과 함께 판매된 것으로 봐 「관세법」 제30조의 거래가격 방법(제1방법)으로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무상물품 즉, 판매되지 않은 물품으로 봐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제2방법 이하)의 대체적인 평가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다.

제2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일반 및 계약 FOC 조건을 포괄계약의 내용으로 삼고 있고 유상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거래가격 배제사유(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될 여지가 없고, 거래 내용에서 ‘간접지급’으로 불만한 것도 없다. 또한 실제 지급된 가격이 수입 이후 변경된 사실도 없다. 제2판결의 사실관계에서 ‘할인’에 대한 관세평가 규정이나 법리가 적용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5) 제2판결에 대한 평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덤’으로 주어진 물품 그 자체를 평가할 때 ‘수량할인’에 대한 관세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덤’은 함께 수입된 유상물품과 하나의 가격으로 판매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무상물품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일 뿐이다.

이번 사안에서 개별계약의 실재를 보면, 계약 FOC 물품을 일반 FOC 물품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계약 FOC 물품도 일반 FOC 물품과 동일하게 WCO 교육훈련모듈에서 제시된 판단 기준에 부합하며, 유상물품과 하나의 동일거래로 취급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2018년 Cru▽▽ 품목에 대해 ① 개별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상물품과 ‘덤’을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견해와 ② 포괄계약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수량할인 기준을 적용해 계약

FOC 물품을 무상물품으로 보는 견해(제2판결의 결론)를 각각 적용해 보자[29p, 2)항 및 표 'FY2018 Cru▽▽ 품목 주문 및 공급 현황' 참조].

①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 또는 계약 FOC 물품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 건의 과세가격(단가)은 해당 개별 계약에서 실제 지급된 가격(유상물품 수량 × 단가)을 실제 주문·수입된 수량 합계(유상 + 일반 + 계약 FOC 물품 수량)로 나눈 가격이다. 개별 계약의 실제에 부합하는 평가다.

반면 ②의 관점에서 보면, 계약 변경 이전 유상물품과 일반 FOC 물품의 과세가격(단가)은 제1방법으로 $[(\text{유상물품 수량} \times \text{단가}) \div (\text{유상} + \text{일반 FOC 물품 수량})]$ 이고, 계약 FOC 물품은 제2방법에 따라 같은 단가로 평가될 것이다. 그런데 계약 변경 이후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제공돼야 할 일반 FOC 물품을 회수해야 할 계약 FOC 물품과 상쇄한 것이므로, 그 일반 FOC 수량(20개)만큼의 할인은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¹⁴⁾ 논리적 비약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할인'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

제2판결에서 법원은 계약 FOC 조건은 수량 할인에 해당하지 않고, 무상공급물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명시적으로 인과관계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수량할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상물품'이라는 논리구조를 띄고 있다. 그런데 '수량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상물품'이라는 명제는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량할인'과 '무상물품' 해당 여부는 별개의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 쟁점이다. 물론 "수량할인에 해당하므로 무상물품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이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논리 전개는 아쉬운 점이다.

또한 "수량할인은 적어도 수입신고 시점에 할인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덤'이 무상물품인지 여부를 판단했으나, 왜 '수량할인'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덤'이 무상물품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와 법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유상물품의 가격이 '할인'됐다면, 그 조건인 목표수량 미충족 상태에서 '할인'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추후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추가 지급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실제 가격이 인하되는 '할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제2판결에서 '덤'에 대해 '수량할인'의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수량할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무상물품'이라는 논리도 성립되지 않는다.

14) 2019. 2 ~ 3월 거래에서 회수할 계약 FOC 물품 20개와 상쇄된 일반 FOC 물품 수량 만큼에 대한 '수량할인'을 인정해, 해당 수입 건의 과세가격(단가)을 $[(\text{유상물품 수량} \times \text{단가}) \div (\text{유상} + \text{상쇄된 일반 FOC 물품 수량})]$ 로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2. 제1판결 원심에 대한 평석(서울고법 2017누82446 판결)

1) 제1판결 원심의 판단 이유에 대한 평석

제1판결 원심 법원은 이 사건 특약은 ‘가격조정약관’이나 ‘수량할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원이 이 사건 특약은 ‘가격조정약관’이나 ‘수량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단에는 동의한다. 특히, 이 사건 계약상 유상구입물품의 실제가격은 확정돼 있으며, 실제 ‘할인’(가격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 이유는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이 사건 물품은 가격을 지급하지 않는 무상수입물품으로서 판매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와 판단에 대해서도 수긍이 된다.

2) 제1판결 원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쟁점에 대한 검토

제2판결과 제1판결의 사실관계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점은 ① 이 사건 특약상 최소 10% 또는 11%의 무료샘플(이하 ‘기본 무료샘플’이라 함)은 연간 누적 구매수량과 무관하게 반드시 제공되기로 약정돼 있다는 점과 ② 이 사건 물품인 무료샘플은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로 수입됐다는 점이다.

먼저, 이 사건 특약에 의해 연간 누적 구매수량의 10% 또는 11%의 기본 무료샘플이 무조건 제공되기로 확정돼 있다는 점에서 기본 무료샘플은 유상구입물품의 가격으로 함께 판매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¹⁵⁾ 만약 해당 기본 무료샘플이 관련 유상물품과 함께 선적·수입됐다면 제2판결의 일반 FOC 물품과 같이 하나의 거래로 봐 유상물품의 가격에 포함돼 제1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기본 무료샘플은 추가 무료샘플¹⁶⁾과 함께 계약기간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별도로 수입됐다.

그러면 이 사건 기본 무료샘플과 같이 포괄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무상물품(‘덤’)이라도 유상구입물품과 함께 선적되면 하나의 거래로 봐 제1방법으로 평가하고, 별도로 선적되면 판매되지 않은 무상물품으로 봐 제2방법 이하 대체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상반된 두

15) 이정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구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무상 제공된 수입물품을 유상물품으로 판단한 판례 해설’,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049호(2023. 9. 4.)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이정완은 ‘기본 무료샘플’에 대해 ‘수량할인’의 관점에서 “수입신고 시점에 무상물품을 추가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돼 있으므로 수량할인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기본 무료샘플’과 ‘추가 무료샘플’은 달리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16) 2012년에만 기본 무료샘플에 추가 무료샘플을 포함한 유상구매물품의 14.5%가 제공됐고, 2013년과 2014년에는 연간 누적 구매수량 첫 구간을 초과하지 않아 기본 무료샘플(각 11%)만 수입됐다.

견해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우선, 포괄계약 등에 따라 유상물품 구매 시 무료샘플 제공이 확정되는 경우라면 별도 선적돼 수입되더라도 유상물품과 함께 제1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 견해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In dubio pro reo)에 의해 지지된다.

다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선적·수입됐다면 무상물품으로 봐 제2방법 이하의 대체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다. 그 이유로는 「관세법」상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시점에 확정돼야 하는바, 포괄계약 등에 의해 유상물품 구매 시 무상물품(‘덤’) 제공이 예정돼 있더라도 추후에 별도로 선적돼 수입되는 경우에는 개별 계약 및 관련 상업서류 등에 무상물품 공급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제2판결에 대한 평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평가는 수입물품별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각 수입물품(선적분)에 대한 개별 계약에 초점을 맞추고 포괄계약을 함께 살펴야 한다. 또한 관세 채권은 수입신고 당시 확정돼야 함이 원칙이다. 포괄계약에 따라 ‘덤’의 제공이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 계약에 의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유상물품 수입 당시 아직 제공되지 않은 ‘덤’까지 고려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거나, 유상물품 수입 당시에는 지급된 가격으로 평가하고 이후 ‘덤’이 수입될 때 소급해 과세가격을 경정(감액)한다는 것은 관세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무상물품(‘덤’)이 유상물품과 하나의 가격으로 함께 판매(동일 거래)된 것으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i) 운송의 편의나 재고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물품과 함께 선적돼 수입돼야 하고, (ii) 해당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된 개별 계약 및 관련 상업서류에 ‘덤’ 제공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관세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 글에서 다루는 법원 판결과 같은 법률해석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입법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 장에서 필자의 입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제1판결에 대한 평석(대법원 2018두47714 판결)

제1판결의 핵심은 원심이 ‘무상성’과 ‘실질과세의 원칙’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 이 사건 특약에 따라 기본 무료샘플이 반드시 추가로 공급되는 것이 예정돼 있으며, ㉡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단위당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 이 사건 물품이 명목상 ‘무료샘플’로 수입 당시 그 대가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이나 제2판결에서와 같이 ‘수량할인’이나 ‘가격조정약관’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물론,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점을 판단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덤’을 무상물품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수량할인’에 대한 관세평가 법리 및 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않은 점을 타당하다고 본다. 대신 ‘무상성’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먼저, ‘실질과세 원칙’에 대해 살펴본다. 실질과세 원칙은 헌법상 기본 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 규제와 과세형평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¹⁷⁾으로 관세법률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대법원도 2003. 4. 11. 2002두8442 판결에서 「관세법」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¹⁸⁾한 이후, 여러 판결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관세법」에도 해당 원칙이 적용됨을 밝혀왔다.¹⁹⁾ 따라서 관세 과세가격을 다루는 이 사건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여러 학설이 존재하지만,²⁰⁾ 현재 우리 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²¹⁾

제1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기본 무료샘플이 반드시 추가로 공급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총지급액과 총구매수량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봤다. 이 부분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7)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18)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해당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19)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8636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20)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즉, 조세법률주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과세 원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조세정의(과세 형평)를 중시할 것인지의 문제로서, ‘법적 형식 기준설’, ‘경제적 실질 기준설’ 그리고 ‘절충설’ 등이 있다.

2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이들 판결은 ‘절충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고와 수출자가 이 사건 특약을 통해 ‘무료샘플 제공’이라는 법적 형식을 취한 것은 명백하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무료샘플을 제공하기로 약정하든지 거래수량에 따른 할인을 허용하든지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경제적 목적과 효과는 동일하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무료샘플 제공이라는 법적 형식을 선택한 것은 가장행위라든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무료샘플(무상물품)’이라는 법적 형식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사후적 결과(효과)만을 중시한 것은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한다는 기존 대법원의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범리에 반하는 판단으로 보인다.²²⁾

제1판결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판결의 취지로 볼 때 쟁점 무료샘플의 ‘무상성(대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2) ‘무상성’ 판단에 대한 검토

제1판결은 이 사건 무료샘플의 ‘무상성’에 관해 실질적으로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특약에는 10% 이상의 적지 않은 비율의 기본 무료샘플 공급이 반드시 예정돼 있고, 이로 인해 연간 실질적 단위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1년 단위로 연간 총지급액과 총구매수량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봐 무료샘플은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민사법상 계약 해석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해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그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각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 계약이 아니라 연간 포괄계약에 의한 전체 거래를 종합해 판단한 것이다.²³⁾

이 같은 방법으로 관세평가에서 ‘무상성’을 대가관계의 존재 여부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앞서 Ⅲ.-1.-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 과세단위는 각 수입물품이고 관세 신고납부는 각 수입신고 단위로 해야 하므로 관세평가는 해당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된 개별 계약을 중심에 두고 전체 거래(포괄계약)를 참조해 검토해야 한다. 본 판결에서 전체 거래 및 그에 따른 사후적 결과만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은 관세의 과세단위 및 신고납부 체계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하자보증 수리용 부분품과 비교해 보자. WCO 예해 20.1에 따르면, 물품(본품)이 수입된 이후

22) 이상욱, ‘무상 수입물품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법률신문(2023. 5. 21.)

23) 윤준석,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만큼 공급받은 물품이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하는지’, <2023년 관세평가 판례평석집>, 관세평가분류원(2023), 265 ~ 271면

무상 하자보증 기간 내에 하자보증의 이행을 위해 무료로 송부되는 부분품 등은 무상물품(판매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제2방법 이하의 대체 방법으로 평가된다. 이 예해는 “수리·대체용 부분품의 가격은 이미 본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과세되었으므로 제2방법 이하로 다시 과세(평가)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문제는 감면 등 다른 통관절차나 기술 등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제1판결에서와 같이 민사법적 관점에서 ‘무상성’을 판단한 기준으로 본다면 본품 수입 후 무상제공되는 하자보증용 부분품도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반면, 수리용 부분품 등이 본품과 동봉돼 수입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2방법 이하로 평가하지 않고 본품의 가격으로 함께 판매된 것으로 본다. 경제적 목적과 효과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수입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관세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IV. 제언 및 미치는 글

지금까지 일정 수량을 구매하면 추가 수량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덤’에 대한 관세평가 쟁점을 다루는 판결들을 살펴봤다. ‘덤’과 ‘할인’은 그 경제적 효과는 결과적으로 같을 수 있지만, 명백히 다른 법적 사실관계임을 지적했다. 특히, 관세평가의 객체인 수입물품에 초점을 맞추면 이는 분명해진다. 경제적 효과가 같다고 ‘덤’으로 주어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할인’(가격 인하)의 관세평가 법리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없다. 이상의 논의에서 필자는 ‘덤’에 대해서는 ‘할인’과 다른 관세평가상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덤’에 대한 관세평가는 그와 관련된 유상물품과 하나의 가격으로 함께 판매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제1판결에서 ‘무상성’ 여부를 검토한 이유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인다.

제1판결의 원심과 제2판결은 ‘덤’에 대해 ‘수량할인’에 대한 관세평가 법리와 기준을 적용해 판단했다. 이와 달리, 제1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무상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의 ‘덤’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한 ‘무상성’ 판단의 기초에는 민사법상 계약 해석 방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개별 수입물품을 과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채권을 확정하는 관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다르게 판단한 이유가 설명돼 있지 않다.

법률의 적용에 있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제1판결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세행정을 집행하는 세관당국도 해당 판결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문제를 WCO의 관세평가기술위원회(TCCV)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실질적으로 표결(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제(consensus)로 지침(기술문서)을 채택하는 해당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덤’에 대한 관세평가 기준으로 필자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관세법령 개정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만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수량 할인’과 관련한 관세평가 규정인 ‘거래가격 배제사유’ 또는 ‘실제지급가격(간접지급)’에 대한 규정이 아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 대한 규정인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이를 반영하는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무상물품(‘덤’)에 대한 관세평가 처리 기준 법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이유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1.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다만, 유상으로 판매되는 물품과 하나의 거래에 의해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판매되는 물품으로 본다.	<단서 신설> 명목상 무상물품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과 함께 우리나라에 도착할 것. 다만, 운송상 이유 등으로 분할 선적되는 경우에는 함께 도착한 것으로 본다.
	가. 판매되는 물품과 함께 우리나라에 도착할 것. 다만, 운송상 이유 등으로 분할 선적되는 경우에는 함께 도착한 것으로 본다.	품과 함께 판매된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과세
	나. 판매되는 물품과 하나의 거래에 의해 도착한 사실이 수입 당시 판매계약서, 송품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될 것.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물품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
2. ~ 7. ... <중략> ...	2. ~ 7. <현행과 같음>	

상기 제안에서는 ‘덤’을 유상물품과 함께 판매된 것으로 봐 제1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을 설정했다. 첫 번째는 유상판매물품과 함께 선적돼 수입돼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유상판매물품과 하나의 거래에 의해 제공되는 사실이 수입 당시 계약서, 송품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굳이 이렇게 엄격한 요건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과세관청 입장의 과세 편의주의적 의견이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가상의 사례에 이를 적용해 보면 얼핏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일 수 있다.

■ 연간 100개를 주문하면 추가로 10개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연간 포괄계약을 체결했다.

Case 1 : 1차 50개, 2차 50개를 유상으로 주문해 수입했고, 연말에 포괄계약에 따른 ‘덤’ 10개가 무상으로 제공돼 별도로 수입됐다.

Case 2 : 1차 50개를 유상으로 주문해 수입했고, 연말에 2차로 유상 50개와 ‘덤’(무상) 10개를 함께 주문해 60개가 수입됐다.

앞서 제안한 개정안을 적용하면 ‘Case 1과 2’에서 ‘덤’으로 제공된 10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Case 1’에서 ‘덤’ 10개는 판매된 물품(유상)과 함께 수입되지 않으며 구매주문서나 송품장에 유상물품과 함께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무상물품으로 봐 제2방법 이하로 평가될 것이다. 반면, ‘Case 2’의 ‘덤’ 10개는 2차 유상물품 50개와 함께 주문돼 수입되고, 구매주문서나 송품장에 함께 표시돼 있다면 유상물품과 함께 판매된 것으로 봐 제1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²⁴⁾

이 예시에서 ‘덤’ 10개는 제공되는 시기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사례는 동일하게 평가돼야 하며, 이를 달리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²⁵⁾ 그러나 연말에 비로소 약정된 주문 수량을 충족해 ‘덤’이 주어졌을 때 과거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 격을 매번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관세채권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시점에 확정돼야 하고, 그 예외는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각각의 물품이 수입된 개별계약(주문)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두 사례의 사실관계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할 때 더욱 그렇다.²⁶⁾

현행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범인 「WTO 관세평가협정」은 ‘일물일가(一物一價)’를 지향하는 관념적인 가격 개념(notional concept)이 아닌 ‘당사자들이 실제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격’인 실제적 가격 개념(positive concept)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업적 관행과 일치하는 단순

24) ‘Case 2’에서 ‘덤’으로 주어진 10개를 제1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이 10개의 ‘덤’은 1차 주문에 대한 5개와 2차 주문에 대한 5개를 합한 것이므로 1차 수입분 50개의 과세가격을 10% 정도 감액(개당 10원이라면, $50개 \times 1,000원 / 110개 = 454.54원$)하고 2차 수입분 60개의 과세가격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60개 \times 1,000원 / 110개 = 545.45원$)는 논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덤’을 다시 ‘할인’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거래가격 방법(제1방법)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 지급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1차 선적분(50개)과 2차 선적분(60개)은 모두 실제 지급된 가격(500원)으로 평가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물품이므로 단위당 과세가격도 같아야 한다는 것은 관념적 가격 개념(notional concept)으로 실제적 가격 개념(positive concept)을 채택한 「WTO 관세평가협정」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

25) 윤준석, 앞의 논문, 275면, 여기에 예시된 가상의 사례도 같은 논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26) ‘Case 2’에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고 공평한 기준을 기초”²⁷⁾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원칙들은 이 평석의 주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덤’과 ‘할인’은 상거래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래 형태(법적 형식)이며, 그 자체로 각각 별개의 상업적 관행이다. ‘덤’과 ‘수량할인’의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고 해 동일한 관세평가 기준이 적용되고 그 결과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덤’으로 주어진 무상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는 관련된 유상물품과 하나의 가격으로 함께 판매된 것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업적 관행에 일치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한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관되게 집행하는 것은 과세당국 입장뿐 아니라 납세자들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27) 「WTO 관세평가협정」 서문 “Recognizing that customs value should be based on simple and equitable criteria consistent with commercial practices … <후략>”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환급 / 검사로 반출된 물품의 재수입

**해외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수출거래구분 '92'로 반출한 뒤
수입거래구분 '94'로 수입했습니다.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의 재반입 시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관세법」 환급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정정, FTA 사후적용 등에 따라 세액의 감액으로 발생되는 과오납 환급, 물품하자·계약내용 상이 등의 사유로 해외거래처로 반품한 경우 발생하는 계약 상이 환급이 있으며, 「환급특례법」 환급에는 수출물품을 생산(제조, 가공 등)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특례법」상 수출 등에 제공했거나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원상태수출 환급'의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관세법」 환급 및 「환급특례법」 환급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시에는 수출거래구분을 '83(재수입 조건부 수출)'으로 제품의 시리얼넘버 등을 명시해 신고하고, 해당 물품을 검사 후 국내로 반입 시 수입거래구분 '83(외국에서 검사·수리 목적으로 반출하였던 물품의 수입)'으로 진행하면서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습니다.

품목분류 / 옥탄가 측정기의 HS Code

가솔린 옥탄가 측정기의 세번이 알고 싶습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 밖의 기기'의 '기타'에 해당된다면 제9031.80-9099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3) 연료시험에 사용하는 종류의 이화학 기기[특히 석유의 옥탄가(octane index)나 디젤엔진오

일의 세탄가(cetane index) 측정에 사용한다 : 이 기기는 보통 내연기관, 발전기, 점화발생기, 가열 저항기, 측정기기(온도계·압력계·전압계·전류계 등)로 구성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산지 / 원산지 표시

TV 스탠드와 함께 추가로 설치 가능한 브라켓도 수입해 별도 판매할 경우 소매용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 당구 공, 콘택트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밀봉된 의약품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최소포장단위 원산지 표시 허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TV 플레이트, 브라켓 등 제품의 경우 무거운 TV를 벽면에 고정하는 주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소비자가 안전성을 주로 고려해 구매하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쇄, 주조 등과 같은 원칙적인 방법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포장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대물렌즈 품목분류에 관한 판례 해설

이영민 |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제정한 관세 등에 통용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의 체약국으로서 HS협약을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 수용해 적용하고 있다. HS협약 제3조에 따라 체약국은 6단위 부호(소호)까지 자국의 관세율표와 품목분류표를 HS협약의 체계와 일치시켜야 하므로,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있어서 6단위 부호(소호)까지를 HS협약에 따라 편성하고 있고, 그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하위분류 4단위 부호를 추가해 총 10단위 부호로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또는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원칙적으로 각 호(號, heading)의 용어나 관련 부(部, section) 또는 류(類, chapter)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 따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

그리고 「관세법」상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해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해석 원칙에 따라 블랙박스용 배럴 렌즈,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렌즈, CCTV용 렌즈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확대기용·사진축소기용 대물렌즈'에 해당해 HSK 제9002.11-9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해야 하는지, '기타 대물렌즈'인 HSK 제9002.19-9000호(CIT 6.5 ~ 0%)로 분류돼야 하는지가 쟁점인 확정 판결을 살펴보고자 한다(인천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54512 판결¹⁾).

1) 원고의 항소 부제기에 따라 확정됐다.

● 관세율표 제9002호 품목분류 체계 ●

품목번호		품 명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9002	1	대물렌즈
9002	11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
9002	11 1000	사진기용
9002	11 90	기타
9002	11 9010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
9002	11 9020	영사기용
9002	11 9090	기타
9002	19	기타
9002	19 1000	현미경용
9002	19 9000	기타
9002	20	필터
9002	20 1000	사진기용
9002	20 9000	기타
9002	90	기타
9002	90 1000	사진기용
9002	90 90	기타
9002	90 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9002	90 9090	기타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블랙박스용 배럴 렌즈,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렌즈, CCTV용 렌즈(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렌즈’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위 각 렌즈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002.19-9000호(기타의 대물렌즈) 및 제9002.90-9090호(기타 광학소자)로 분류해, 2017. 3. ○○.부터 2020. 12. ○○.까지 225회에 걸쳐 피고에게 수입신고했고, 피고는 이를 수리했다.

나. 피고는 2020.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렌즈의 품목분류가 잘못됐으니 수정신고를 하라는 취지로 안내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렌즈의 품목분류를 HSK 제9002.11-9010호 또는 HSK 제9002.11-9090호로 변경하면서, 관세 등 부족세액을 수정신고·납부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렌즈가 HSK 제9002.19-9000호(기타의 대물렌즈)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 피고에 대해 관세 합계 1,032,869,800원, 부가가치세 합계

103,287,050원 및 가산세 합계 345,046,490원(총합계 1,481,203,3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각 경정청구를 했는데, 피고는 2022. 5. ○○. 이를 거부하는 각 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2022.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23. 3.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렌즈가 카메라용, 영사기용, 사진확대기용, 사진축소기용 대물렌즈에 해당함을 전제로 HSK 제9002.11호의 소호(小號)로 분류해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 그러나 HSK 체계상 HSK 제9006호에 속하는 사진기(photographic cameras)와 HSK 제8525호에 속하는 디지털 카메라(digital cameras)는 별개의 물품인바, 이 사건 각 렌즈는 디지털 방식으로 영상정보를 변환해 처리·저장하는 물품에 사용되는 렌즈이므로, HSK 제9002.11-1000호의 사진기용(for photographic cameras)으로 분류될 수 없고, 영화(movie)를 촬영하는 데 사용되는 촬영기(movie cameras), 자기 테이프 등에 이미지 전기신호를 기록하는 비디오카메라(VTR, video tape recorder cameras), 영사기 등으로도 분류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물품과 유사하지만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봐 HSK 제9002.11-9090호 ‘기타(Other)’로 분류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렌즈는 다른 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는 기타 대물렌즈에 해당하는 HSK 제9002.19-9000호로 분류돼야 한다.

이 사건 각 렌즈가 HSK 제9002.19-9000호로 분류되는 이상, 舊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2016. 12. 1. 개정 대통령령 제27651호, 이하 ‘舊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다]에 따라, 이 사건 각 렌즈에는 2017년에는 6.5%, 2018년에는 3.3%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2019년 이후에는 관세가 면제돼야 한다.

4. 판결 내용의 요지

1) HSK에 있어서 부·류·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해 규정한 것으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되고[HSK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하고(통칙 제3호 가목),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된다(통칙 제4호). 소호(小號)

의 품목분류에도,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통칙 등이 적용된다(통칙 제6호).

2) 원고가 제출한 서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각 렌즈는 HSK 제9002.11-9090호로 분류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의 경우 블랙박스, ADAS, CCTV 카메라 등이 속하는 HSK 제85류 물품의 부분품은 HSK 제16부(제85류가 속하는 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21. 12. 28. 관세청고시 제20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HS 해설서(이하 ‘HS 해설서’라 한다) 제16부 총설 (I)의 (A)항 참조], HSK 제9002호의 광학소자는 그들이 부착될 기기에 관계없이 HSK 제9002호에 분류한다[HS 해설서 제90류 총설 (III)의 (1)항 참조].

② 부분품인 이 사건 각 렌즈가 사용되는 블랙박스, ADAS, CCTV 카메라 등은 그 기능, 구조 등에 있어서 HSK 제8525.80호에 해당하는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등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HSK 제8525호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은 HSK 제8517호로 분류되나(HSK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 HSK 제8517호에는 대물렌즈에 관한 내용이 없다(전자기기에 관한 HSK 제85류 전체를 보더라도 대물렌즈에 관한 내용은 없다). 반면, HSK 제9002호는 대물렌즈에 관해 사진기용,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 영상기용, 기타로 세분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렌즈는 HSK 제9002호로 분류된다[HS 해설서 ‘통칙 제3호 가목’ (IV)의 나 부분 참조].

③ 통칙 제6호에 따라 소호들 사이에서 비교할 때, 이 사건 각 렌즈는 영상을 촬영해 저장, 전송 또는 이용하는 전자기기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현미경 또는 천체망원경용 대물렌즈(HSK 제9002.19-90호)보다는 촬영기, 비디오카메라용 대물렌즈(HSK 제9002.11-90호)와 더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촬영된 동영상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해 처리·저장하는 전자기기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렌즈는 디지털 카메라 또는 이러한 기능을 포함한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대물렌즈와 같은 소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대물렌즈는 다음 ④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평가분류원에 의해 HSK 제9002.11-9090호로 분류돼 왔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전체 대물렌즈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위 대물렌즈들을 ‘촬영기, 비디오카메라용 대물렌즈’와 유사하지만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은 품목’에 해당하는 HSK 제9002.11-9090호가 별도로 있음에도, ‘다른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기타 대물렌즈’로 봐 HSK 제9002.1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2021. 9. 9. 관세평가분류원에 이 사건 각 렌즈 중 블랙박스용 배럴 렌즈에 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21. 10. 5. 이 사건 각 렌즈 중 블랙박스용 배럴 렌즈의 품목분류를 HSK 제9002.11-9090호로 결정해 회신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휴대전화 카메라용 대물렌즈, 디지털카메라용 대물렌즈 등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HSK 제9002.11-9090호로 분류·결정해 왔다.

⑤ 원고는 2015. 12. 16.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에 따라 휴대전화 카메라용 대물렌즈를 포함한 기타 대물렌즈에 관한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됐는데, 위 확대협상 관련 각료 선언에 첨부된 별첨 목록(ATTACHMENT A)에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는 대물렌즈의 HS 소호 등이 '900219, Other'로 기재돼 있으므로, 휴대전화 카메라용 대물렌즈는 HSK 제9002.19호로 분류돼야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용 대물렌즈와 같은 소호로 분류돼야 하는 이 사건 각 렌즈도 HSK 제9002.19호로 분류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서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WTO ITA 확대협상에 따라 이 사건 각 렌즈와 같은 소호로 분류되는 휴대전화 카메라용 대물렌즈 등에 적용되는 관세가 완전철폐 또는 인하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시사점

대상 판결에서 이 사건 물품은 블랙박스, ADAS, CCTV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HS 해설서 규정(제16부 및 제90류 총설)에 따라 관세율표 제9002호 대물렌즈에 분류된다고 해석하면서, 이 사건 물품이 촬영된 동영상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해 처리·저장하는 전자기기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디지털카메라 또는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대물렌즈와 같은 소호로 분류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대물렌즈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일관되게 HSK 제9002.11-9090호로 분류·결정돼 왔음을 들며, 이 사건 물품 또한 HSK 제9002.11-9090호로 분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2015. 12. 'WTO 정보기술제품 무역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의 Attachment A에는 ITA 2차 확대협상 결과 적용받는 무세화 품목을 특정하기 위해 물품명이 아닌 품목번호와 HS상 영문명으로 명확히 표기(900219, Other)하고 있고, 이 사건 물품명으로 특정해 무세화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90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도 않고 있어,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9002.11호에 분류해야 된다고 봤다.

이처럼 대상 판결은 품목분류는 무엇보다도 HS 해설서의 문언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고 관세평가분류원의 일관된 품목분류 사례를 존중한 판결로서 앞으로 품목분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HS 제8476호의 범위와 Reverse Vending Machine의 품목분류 - feat. WCO HS위원회 -

김 성 채 | PWC 관세법인

1. HS 제8476호의 범위

관세율표 제8476호에는 물품의 자동판매기(Automatic goods-vending machine)와 화폐교환기가 분류된다. 제8476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하나 이상의 코인·토큰이나 자기카드를 슬롯(slot)에 넣으면 어떤 상품을 제시해 주는 여러 가지의 기계를 분류한다(다만,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기계나 류주 혹은 부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는 기계 이외의 것). 이 호에서 ‘벤딩(vending)’이란 물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구매자와 기계 간의 금전적 교환을 의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해설서에서 언급한 금전적 교환 수단 이외에도 NFC(Near Field Communication)나 온라인 결제를 통해 상품을 곧바로 내주는 기기가 포괄적으로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8476호에는 상품을 자동으로 제공하더라도 금전적인 교환 수단을 지급하지 않고 작동하는 기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제8476호에는 금전적인 교환 수단을 지급함으로써 작동하는 기계라 하더라도 상품이 아닌 서비스나 다른 활동을 제공하는 기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들 기계 또는 기기는 보통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예를 들어 자동구두닦이 기계는 제8479호에, 안마용 의자는 제9019호

에, 지하철역 등에서 사용하는 코인 락커는 제94류에 각각 분류된다.

제8476호 해설서 후단부는 이 호에 분류되는 자동판매기의 범위 또는 판매 물품의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 제8476호 해설서

이 호는 우표·**철도용 승차권(railway tickets)**·초콜릿·과자·아이스크림·담배·음료(맥주·포도주·리큐르·커피나 과즙과 같은 것)·화장품(향수 뿜는 기계를 포함한다)·양말·사진필름·신문 등 판매용의 코인 작동식의 기계를 포함하며 ; 또한 네임플레이트(name plate)를 금속의 스트립으로부터 타발하는 기계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화폐교환기(money-changing machine)**도 포함한다.

해설서 내용으로 보자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투입해 철도나 버스의 승차권을 발급받는 기계를 제8476호에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제8470호 또는 제8472호의 용어 및 해설서와 다소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 제8470호 용어

84.70 -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ticket-issuing machine)**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

■ 제8470호 해설서 (D)(2) 항목

(D) 계산기기를 갖춘 그 밖의 기계

... <중략> ...

- (2) 표권 발행기 : **표권(예 : 영화용이나 철도용의 표권)**을 발행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동시에 그 금액을 기록하고 합계를 내는 것이며 ; 어떤 것은 표권에 인쇄하는 것도 있다.

... <중략> ...

발행되는 표권 등을 세기만 하고 금액을 합계하지 않는 기계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72호나 **코인 작동식의 것은 제8476호**).

■ 제8472호 용어

84.72 -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 헥토그래프(hectograph)·스텐실(stencil)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 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연필깎이·천공기·지철기(stapling machine)]

■ 제8472호 해설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 (3) **표권발행기[계산 기구를 갖춘 것(제8470호)과 코인작동식의 기계(제8476호)를 제외한다]** : 이 호에는 표권을 천공(punching)하거나 롤 상태의 종이로부터 표권을 인쇄하여 발행[예 : 버스와 전차의 차장(conductor)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하는 소형의 휴대용 기계가 포함되며 ; 또한 표권에 날짜를 찍는 기계도 포함한다.

각 호의 용어와 해설서 맥락에서 경계를 정밀하게 정의하자면 승객의 입장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투입해 기계에서 결제한 후 승차권을 받는 경우 제8476호의 자동판매기에 해당하며, (대체로 공급자, 예를 들면 창구 직원 입장에서) 승차권을 발행해 승객에게 제공해주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는 제8470호에 분류되고 이러한 기계에 계산이나 기록 기능이 없는 것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하철 역에서 현금을 투입해 토큰을 발급받는 기계가 제8476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시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하철 토큰 판매기를 제외하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 티켓 발매기(기차, 버스, 영화, 야구 등)는 품목분류상 경계가 모호하다. 이러한 기기는 기계에서 바로 대금을 결제하고 티켓을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사전에 온라인으로 결제한 후 예약된 티켓을 단순히 발권만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기계에서 곧바로 대금을 결제하고 티켓을 받는 기능은 제8476호에, 사전 예약된 티켓을 단순히 발권만 하는 기능은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 단말기와 유사하게) 제847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외 분류사 레로는 이러한 물품은 제8470호에 더 많이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제8476호의 개정 제안(WCO HS 검토소위원회)

앞서 말한 것처럼 제8476호에는 현금 등 지급 수단을 투입하면 상품을 공급해주는 종류의 기계가 분류된다. 그리고 지급 수단을 투입하는지 여부 또는 제공되는 대상이 상품인지 아니면 서비스나 다른 활동인지 여부에 따라 제8476호 분류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반대로 상품을 투입하면 현금과 같은 지급 수단을 제공해주는 기계는 어떻게 분류될 것인가?

일견 제8476호의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제8476호에 분류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으나 동등한 가치의 지급 수단과 상품의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제8476호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제8476호에는 현금교환기가 분류된다는 점에서도 후자의 견해가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다.

제62차 WCO HS 검토소위원회(2023년 5월)에서는 WCO 사무국의 제안을 토대로 제8476호에 ‘Automatic Reverse Vending Machine(Automatic RVM)’을 포함하도록 하는 HS 개정안을 검토했다.

‘Reverse Vending Machine’이란 일반적인 자판기와는 반대로 재 활용 가능한 빈 병이나 캔을 기계에 넣으면 보상(주로 현금이나 할인 쿠폰)을 받는 시스템을 가진 기계로 주로 재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사용된다.

● Reverse Vending Machine(RVM) ●



출처 : Acro Recycling

사무국은 RVM의 전 세계 거래량이 2022년 기준으로 약 4억 5,000만 달러에 이르고 2030년에는 7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호 또는 소호 신설 요건을 충족함은 물론 환경보호 측면에서의 HS 개정 방향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HS 개정안 검토를 제안했다.

● 2028 HS 개정안 ●

현행(2022 HS)	개정안
84.76 - 물품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84.76 - 물품의 자동판매기, 화폐교환기와 역 자동 판매기(Automatic reverse vending machine)
<신설>	8476.30 - 역 자동판매기

소위원회는 대체로 사무국의 제안 방향에 동의해 호 및 소호의 용어, 소호 해설서 등 개정안을 좀 더 합리적으로 다듬기 위한 수정 제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기준에서 이 물품의 품목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HS위원회에서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를 먼저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3. RVM의 품목분류 논의(WCO HS위원회)

HS 검토소위원회에서의 제안에 따라 제73차 HS위원회(2024년 3월)는 3종의 RVM의 품목분류를 검토했다.

■ [물품 1] 분류·압축 유닛이 제시되지 않은 RVM

빈 음료수 용기를 수집하는 RVM. 사용자가 기계에 병과 캔을 투입하면 기계 내의 컨베이어 벨트를 통하여 이송됨. 이송하는 동안 용기는 인식모듈을 통하여 바코드 등을 통하여 구분되고 중량이 측정됨. 본 기기는 투입된 물품에 합당한 보상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계산할 수 있음. 본 기기는 통상 분류 및 압축 유닛(물품 2)과 함께 설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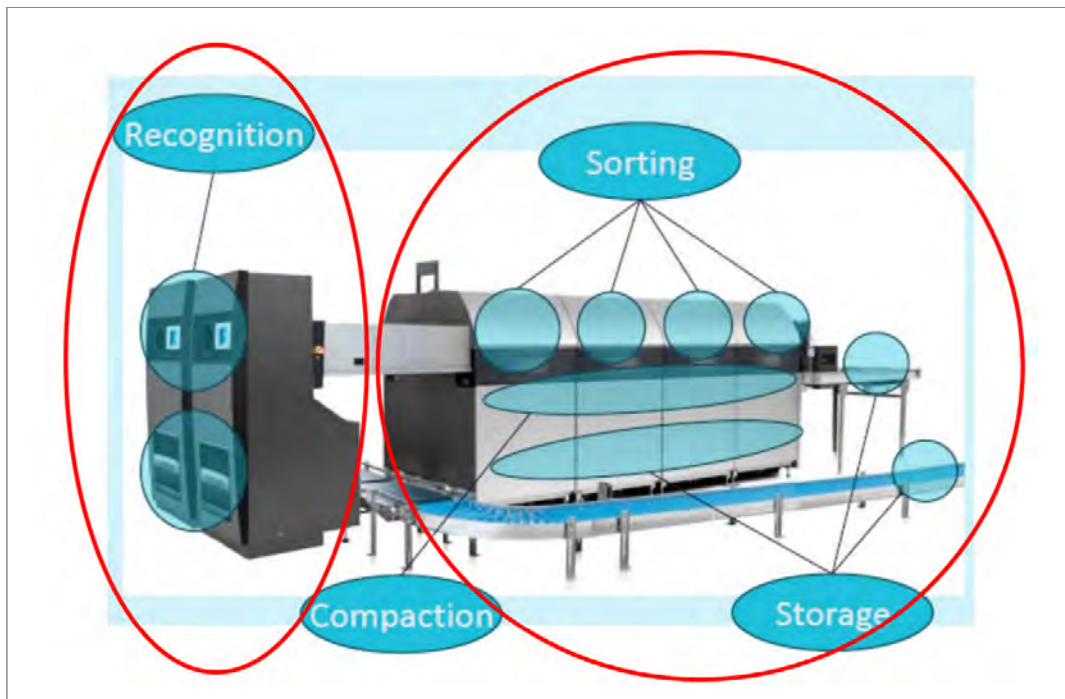
■ [물품 2] 별도로 제시된 RVM용 분류·압축 유닛

RVM(물품 1)으로부터 빈 음료수 용기를 전달받는 물품. 투입된 용기를 적절한 위치로 이송시키기 위한 것임. 수집하는 RVM. 1회용의 용기는 압축모듈 쪽으로 보내지며 압축 이후에 대상물품은 저장소 방향으로 떨어짐. 재사용 가능한 유리병은 압축되지 않고 별도의 저장파트로 보내짐. 저장소가 꽉 차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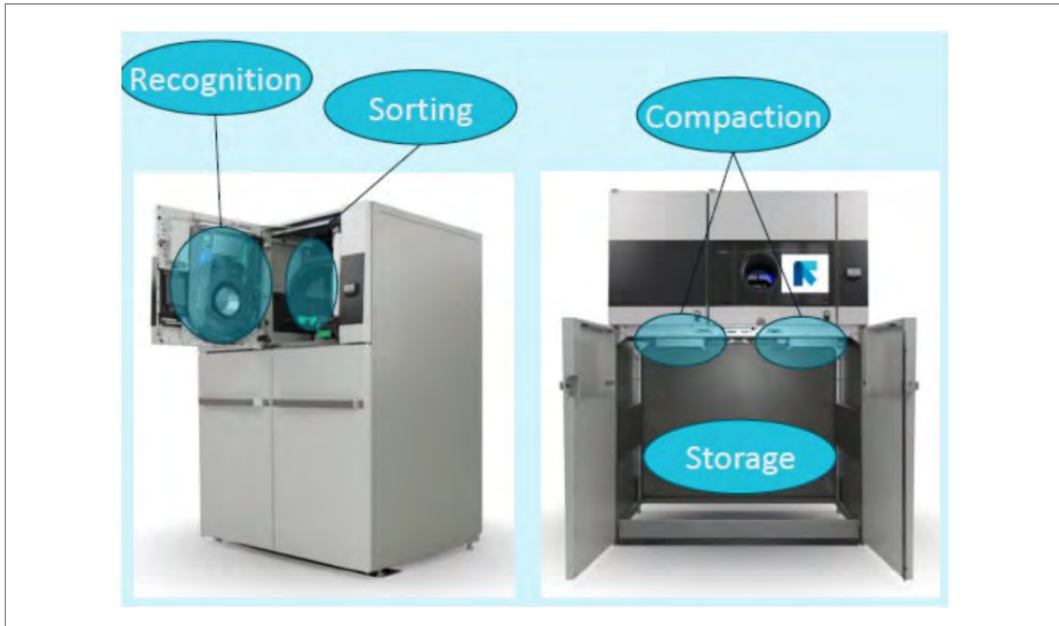
■ [물품 3] 분류·압축 유닛을 내장한 RVM

물품 1과 물품 2의 결합품의 소형 버전으로 빈 용기를 수집, 계수, 계량하고 보증금을 환급하며, 일회용 용기를 압축하는 기능이 포함된 물품.

● 물품 1(왼쪽)과 물품 2(오른쪽)가 결합돼 설치된 상태 ●



● 물품 3 ●



품목분류 관점에서 물품 1과 물품 3은 동일하게 취급된 가능성이 높다. 별도로 제시되는 물품 2의 경우 물품 1 또는 물품 3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HS위원회는 물품 1과 3의 품목분류를 논의하면서 제8470호(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 사이즈형 전자수첩, 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 제8476호(자동판매기) 및 제8479호(제84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갖춘 기타의 기계)를 검토했다.

물품을 투입하면 그 가치에 해당하는 지급 수단(보증금 또는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을 제8476호의 맥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RVM은 제8476호에 분류될 것이다.

현금을 투입해서 물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은 제8476호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본다면 다음으로 제8470호가 검토될 수 있다. 투입되는 용기의 수량, 중량을 기록 및 계산하고 형태별로 분류하는 기능을 제8470호의 범주로 본다면 이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상 제8470호의 기기에는 계산 및 금전출납 등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기기가 포함되므로 이러한 물품을 제8470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마지막으로 제8479호가 검토될 수 있다. HS위원회는 투표 결과 물품 1과 3을 제8479.89호에 분류했다.

물품 2의 경우 제8479호에 분류되는 데 큰 쟁점이 없을 수 있으나 이를 물품 1의 부분품으로 보는지 독립적인 기기로 보는지에 따라 소호 단위의 분류는 달라질 수 있다. HS위원회는 물품 2를 RVM의 부분품이라기보다는 독립된 기능을 갖춘 물품으로 판단했고 투표 결과 물품 2 역시 제8479.89호에 분류했다.

4. 2028년 HS 개정 방향

HS 검토소위원회는 현행의 HS 기준으로는 RVM을 제8479호에 분류하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RVM을 제8476호에 포함하도록 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2028년 HS에 반영하기로 검토했고 이 안건을 포함한 2028년 HS 개정안은 차기 HS위원회(2025년 3월)를 거쳐 올해 6월에 개최될 WCO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HS 제8476호의 범위가 개정안과 같이 확정될 경우 2028년 이후에는 앞서 언급한 물품 1과 3은 제8476호에, 물품 2는 제8479호에 각각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석탄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석탄’(石炭, coal)은 주로 고생대 석탄기 무렵 식물에서 유래한 유기 퇴적물이 오랜 세월 지압 및 지열을 받아 분해돼 생긴 퇴적암이다. 검은색 또는 짙은 갈색을 띠며 탄소·산소·질소·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데, 약간의 황과 많은 양의 회분(灰分)과 수분이 들어 있다. 가연성이 좋아 연료나 공업의 재료로 널리 쓰인다.

석탄은 탄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유연탄				무연탄
이탄	아탄	갈탄	역청탄	무연탄

내부에 잔존하는 휘발성 성분의 함량에 따라 구분하며 갈탄 → 역청탄 → 무연탄으로 전환한다.

관세율표 제2701호에서는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2701.11-0000호는 ‘무연탄’, 제2701.12호는 ‘유연탄’을 분류하게 돼 있다.

무연탄과 유연탄은 기본관세(A)가 0%(무세)로 같지만, 유연탄의 경우 내국세인 부가세 10%와 개별소비세 kg당 46원을 과세하게 돼 있다. 다음의 정정 사례를 통해 석탄의 HS Code를 분류해 보자.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흑색의 파쇄상의 석탄으로 ‘무연탄’인 제2701.11-0000호로 신고했다.

석탄의 무연탄과 유연탄 구분 기준은 제27류 소호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27류

1. 소호 제2701.11호에서 ‘무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4 이하인 석탄을 말한다.
2. 소호 제2701.12호에서 ‘유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4를 초과하고, 물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발열량이 1킬로그램당 5,833킬로칼로리 이상인 석탄을 말한다.

석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KS 규격이 있고, 미국의 경우 ASTM 법이 있다. 분석

방법은 나라마다 별도의 규격이 있지만, 거의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다.

석탄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업분석(Proximate Analysis)은 수분(Moisture), 회분(Ash), 휘발분(Volatile Matter), 고정탄소(Fixed Carbon)를 말한다. 수분 및 광물질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시료의 수분함량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선택해 분석해야 한다.

가. 도착기준(ARB, As Received Basis)

수분 전체(TM, Total Moisture)를 포함한 분석을 의미한다. 즉, 수분, 회분, 광물질들이 혼합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 분석을 의미한다.

나. 기건기준(ADB, Air Dried Basis)

40℃ 미만의 온도에서 석탄 내 수분을 증발시킨 후 상태를 기준으로 한 분석을 의미한다. 40℃에서 건조한 후에도 남아있는 수분을 고유수분(IM, Inherent Moisture)이라고 한다.

다. 무수기준(DB, As Dried Basis)

시료를 건조기(107 ± 2℃)에서 60분간 가열해 부착수분과 고유수분을 제거한 시료를 기준으로 한 분석을 의미한다.

라. 무수무광기준(DMMF, Dry basis, Mineral Matter Free Basis)

시료의 부착수분과 고유수분 및 광물질의 양을 뺀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분석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소호주 해설을 보면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이 14% 이하”인 석탄이 ‘무연탄’에 해당한다. 즉, 위 석탄의 공업분석 기준 중 무수무광기준(DMMF, Dry basis, Mineral Matter Free Basis)으로 분석한 휘발성 물질의 함량이 14% 이하인 석탄이어야 하는 것이다.

허나, 우리나라 KS 규격의 경우 석탄의 공업분석은 기건기준(ADB, Air Dried Basis), 무수기준(DB, As Dried Basis)을 기본으로 하므로 어떤 분석 기준을 적용해 결과를 얻었는지 확인해 품목분류를 해야 한다.

해당 물품의 경우 기건기준(ADB, Air Dried Basis) 휘발분은 약 13%로 기건기준일 경우 ‘무연탄’에 해당하지만, 무수무광기준(DMMF, Dry basis, Mineral Matter Free Basis)일 경우 약 14%를 초과해 ‘유연탄’에 해당하는 물품이었다.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4를 초과하고, 물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발열량이 1킬로그램당 5,833킬로칼로리 이상인 석탄으로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제2호에 적합한 유연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01.12-9090호에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ANTHRACITE	2701.11-0000(A 0%) 부가세 면세	Bituminous coal	2701.12-9090(A 0%)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46원/kg

접착제 없이 전기로 붙인다?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 관세사

테이프나 접착제 없이 전기로 물건을 붙이는 기술이 개발돼 화제다.

미국 메릴랜드대 화학 및 생화학부 교수 연구팀은 전류를 흘려 물체를 붙이는 전기 접착 방식으로 금속이나 흑연 등 딱딱한 물체와 동물 조직 같은 부드러운 물질을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문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흑연 전극 2개 사이에 아크릴아마이드 젤을 붙이고 전극 사이에 5볼트(V)의 전압을 걸어 직류로 전기를 흘리면 3분 만에 양극 쪽 흑연과 젤 사이에 강한 접착력이 생기고 전류를 제거해도 결합은 단단히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역지로 떼려 하자 젤이 찢어질 정도로 잘 떨어지지 않았고, 전류를 반대로 흘리자 흑연과 젤은 쉽게 떨어졌다. 물론 이전에도 ‘핫 멜트 글루’라 해서 물이나 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열 용융 접착제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 제품은 열가소성 수지를 베이스 폴리머로 접착부여제 및 용융 시 점도를 저하해 도포성을 좋게 하는 왁스류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가열 용융 상태에서 피착재 표면에 도포 및 접착한 후 냉각하면 고화돼 접착력이 발휘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연구팀은 전기 접착은 두 물질이 전자를 교환하면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결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금속과 동물 조직, 과일 및 채소 등으로 비슷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전기 접착 현상이 발생하려면 단단한 물질은 전자를 잘 전도해야 하고 부드러운 물질은 소금 이온을 함유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냈다고 전했다. 전기 접착은 물속에서도 잘 진행됐다고 하니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표에서 접착제는 원칙적으로 제3506호 ‘조제 글루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된다.

제3506호 해설서 (B)-(4)호에서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분류되는 중합체나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물질로 조제된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 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17호_2025.2.10.

최신개정법령

입법예고

-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본 내용은 www.custracom.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32호, 2025.2.4.)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및 부과 대상 물품 :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 관세품목분류 : HSK 3911.10.1000

나. 부과기간 : 2025. 0. 00. ~ 2025. 0. 00.(4개월)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HengheMaterials&ScienceTechnologyCo., Ltd. (형허), NingboYonghuaResinCo., Ltd. (용화)및 그 관계사 -Henghe (Nanjing)MaterialsTechnologyCo., Ltd. (형허난징)	7.55%
	Tianjin LuhuaHongjinNewMaterial TechnologyCo., Ltd. (톈진루화), WuhanLuhuaHongjinNewMaterialCo., Ltd. (우한루화)및 그 관계사	5.66%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ZiboLuhuaHongjinNewMaterialGroupCo., Ltd. (쯔보루화)	
	-FujianFuhuaLuhuaNewMaterial Co., Ltd. (푸젠루화)	
	-Shanghai LuhuaChemical TechnologyCo., Ltd. (상해루화)	
	-QingdaoYangguLuhuaNewMaterialsCo., Ltd. (청도루화)	
	Ningbo Jinhai ChenguangChemical Corporation (진하이)	4.45%
	그 밖의 공급자	5.66%
대만	ArochemCorporation (아로켄)및 그 관계사	7.07%
	-YuenLiang Industrial&Co., Ltd. (웬량)	
	ChuenHuahChemicalCo., Ltd. (추엔화)	18.52%
	그 밖의 공급자	7.07%

라.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 044-215-4432
- 팩스 : 044-215-8076
- 이메일 : mosf1204@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261호, 2025.2.7.)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내에서 어획 및 유통이 금지된 수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및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불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산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 제기와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유통이력수입수산물’로 추가지정(안 제4조 제1항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누리집(<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fortune0527@korea.kr

2025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 2025년 2월 발간 —



5,160p.(상·하권 1세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엮음

한·필리핀FTA, 2025 HSK·WTO 일부개정 등
올해 개정된 세율과 고시를 한 눈에!

발간기념 **10% 할인!!!**

±26,888원 → **108,000원**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도서구매문의 02)3416-5112 | 온라인구매처 smartstore.naver.com/kctdi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서비스

— 2024년 12월 오픈! —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